
일반논문

www.kci.go.kr

조선의 건륭 칠순 진하특사와 『열하일기』

구 범 진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1. 서론

건륭 45년(1780) 8월 13일은 건륭제의 칠순 생일이였다.¹⁾ 청에서 황제의 ‘칠순만수’(七旬萬壽)는 사상 최초의 일대 경사였다. 건륭제는 8월 13일 피서산장(避暑山莊) 담박경성전(澹泊敬誠殿)에서 거행한 만수절 하례(賀禮)에 두르베트, 우랑하이, 토르구트, 회부(回部), 금천(金川) 지역 토사(土司) 등을 참석시킴으로써 자신의 치세에 이룩한 ‘제국’ 건설의 업적을 성대하게 기념하였다.²⁾ 왕조의 일대 경사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칠순만수’는 10년 뒤의 ‘팔순만수’에 의해 빛이 바랬다고 하겠으나, 오늘날 연구자들은 오히려 ‘팔순만수’보다 ‘칠순만수’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

1) 이 글의 날짜 표기는 청 황제의 연호와 음력을 적는 당시의 표기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구범진(2013), 「1780년 열하의 칠순 만수절과 건륭의 ‘제국」, 『명청사연구』 40 참조

주제어: 『열하일기』, 열하, 박지원, 박명원, 건륭제, 판첸 라마

Yŏlha ilgi, Chengde, Pak Chiwŏn, Pak Myŏngwon, Qianlong Emperor, Panchen Lama

4 인문논총 제70집 (2013)

다. 그것은 판첸 라마 6세[또는 3세]³⁾ 록상 뵘덴 예셰(bLo zang dpal ldan yeshe: 1738~1780년)의 열하 방문 및 건륭제와의 만남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칠순만수’를 계기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당시 달라이 라마 8세(1758~1804년)는 아직 청으로부터 정식 봉호를 받지 않은 상태였으므로⁴⁾ 티베트 불교 깰룩파, 즉 황교(黃敎)의 사실상 최고 지도자는 판첸 라마 6세(이하 ‘판첸’)였다. 따라서 건륭과 판첸의 만남에서 이루어진 ‘의례’는 청·티베트 관계의 성격에 대한 역사적 이해에서 관심의 초점이 되었고, 여기에 오늘날 중국과 티베트의 정치적 이해가 얽히면서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⁵⁾ 이 논쟁은 그 자체로도 흥미롭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한국 문헌, 즉 『열하일기』가 주요 사료로 종종 인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이 간다.⁶⁾

- 3) 전생(轉生)의 대수(代數)를 산정하는 방식의 차이에 따라 록상 뵘덴 예셰는 ‘판첸 라마 6세’ 또는 ‘판첸 라마 3세’로 불린다. 그 차이에 대해서는 구법진(2013), 179쪽의 각주 8) 참조.
- 4) 쿠빌간(khubilgan) 신분이었던 달라이 라마 8세를 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금인(金印)과 칙서(勅書)를 발급한 것은 판첸 라마 6세가 북경에 머물던 건륭 45년 10월의 일이다(『清實錄』, 건륭 45년 10월 乙卯 조).
- 5) 이 논쟁의 논점에 대해서는, 石濱由美子(1994), 『パンチェンラマと乾隆帝の會見の背景にある佛教思想について』, 『內陸アジア言語の研究』 9; James L. Hevia(1995), *Cherishing Men from Afar: Qing Guest Ritual and the Macartney Embassy of 1793*,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pp. 46-47 등 참조. 村上信明(2006), 『パンチェンラマ三世の熱河來訪と清朝旗人官僚の對應』, 『中國: 社會と文化』 21; 張亞輝(2013), 『六世班禪朝覲事件中的空間與儀禮』, 『中國藏學』 2013-1 등은 건륭과 판첸의 만남과 관련된 여러 ‘의례’를 각각의 성격 여하에 따라 구별하여 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향후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판첸에 대한 중국의 연구 현황은 柳森(2010), 『國內近三十年來關於六世班禪朝覲研究綜述』, 『四川民族學院學報』 19-2 참조.
- 6) 예컨대, 일본의 연구 중 石濱由美子(1994), 앞의 논문이나 平野聰(2007), 『大清帝國と中華の混迷』, 東京: 講談社, pp. 197-100 등이 『열하일기』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고, 중국에서도 張雙志(2007), 『18世紀朝鮮學者對清代西藏的觀察: 讀朴趾源《熱河日記》』, 『中國藏學』 2007-3; 柳森(2012), 『論《熱河日記》中的六世班禪形象』, 『民族文學研究』 2012-6 등을 비롯하여 많은 연구가 『열하일기』를 중요한 사

널리 알려진 대로, 『열하일기』는 건륭제의 칠순을 축하하는 사행에 자제군관(子弟軍官)의 신분으로 동참했던 박지원(朴趾源)이 남긴 여행기로, 김창업(金昌業)의 『연행일기』(燕行日記), 홍대용(洪大容)의 『연기』(燕記)와 더불어 ‘연행록’의 최고 걸작으로 꼽힌다. 『열하일기』에 대해서는 한국 문학사와 사상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연구가 나왔으며, 몇 차례 번역이 이루어지면서 조선시대 문헌으로는 보기 드물게 독서 대중의 폭넓은 사랑까지 받고 있다.⁷⁾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문학 작품으로서의 우수성에 더하여 저자 박지원이 18세기 북학과 지식인의 대표자라는 점도 작용했을 것이다. 또한 『열하일기』는 청조 치하의 18세기 중국에 대한 조선인의 관찰 기록이라는 측면에서도 사료적 가치를 인정받아 일찍부터 주목의 대상이 되었으며, 근래에는 중국에서도 적잖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⁸⁾ 『열하일기』가 다양한 분야, 많은 연구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풍부한 내용 덕분이지만, 다른 ‘연행록’과 비교할 때 가장 두

료로 이용하고 있다.

- 7) 한국 문학사 분야에서는 강동엽(1988), 『熱河日記研究』, 서울: 一志社; 김명호(1990), 『熱河日記 研究』, 서울: 창작과 비평사 등을 『열하일기』에 대한 종합적 연구의 대표로 꼽을 수 있다. 이 두 연구가 나온 이후로 『열하일기』의 내용과 형식 및 각종 이본(異本)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반 독서 대중에 박지원과 『열하일기』를 소개하는 다수의 교양서가 출판되었다. 『열하일기』의 번역 성과로는 최근에 나온 김혈조(2009), 『열하일기』, 서울: 돌베개 정도만 언급해 둔다. 기타 『열하일기』의 번역에 대해서는, 김혈조(2008), 『熱河日記』 번역의 여러 문제들, 『漢文學報』 19 참조. 한국 사상사 분야에서 『열하일기』를 전문한 단행본은 보이지 않으나, 박지원의 사상을 다루는 논문이라면 『열하일기』의 내용을 반드시 언급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8) 閔斗基(1986), 『熱河日記에 비친 淸朝政治의 諸樣相』, 閔斗基, 『中國近代史研究』, 서울: 一潮閣, 54~84쪽; 崔韶子(1992), 『18세기 후반 조선지식인 朴趾源의 對外認識』, 『韓國文化研究院論叢』(이화여대) 61-1; 崔韶子(1997), 『18世紀末 東西洋 知識人の 中國認識比較: 朴趾源의 『熱河日記』와 G. Macartney의 『中國訪問使節日記』를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59 등 참조. 중국에서도 馬靖妮(2007), 『《熱河日記》中的 中國形象研究』, 中央民族大學博士學位論文 등 다수의 관련 연구가 나왔다.

드러지는 『열하일기』의 내용상 특징은 역시 조선인의 ‘열하 경험’을 최초로, 그것도 빼어난 글솜씨로 생생하게 그려냈다는 점일 것이다. 박지원은 자신을 포함한 조선 사신 일행의 ‘열하 경험’을 『태학유관록』(太學留館錄), 『찰십륜포』(札什倫布), 『반선시말』(班禪始末), 『황교문답』(黃敎問答), 『행재잡록』(行在雜錄) 등에서 자세하게 묘사하였는데, 이 가운데 건륭과 판첸의 만남에 대한 『찰십륜포』의 묘사는 위에서 언급한 논쟁과 관련하여 특별한 가치를 인정받아 많이 인용되고 있다.

그런데 『열하일기』의 ‘열하 경험’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체로 텍스트 자체의 내용 분석을 위주로 이루어졌다. 즉 ‘열하 경험’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는 판첸이라는 존재와 그에 대한 박지원의 인식, 그리고 조선 사신 일행과 판첸의 만남 등이 주된 연구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저자 박지원이 참여했던 조선 사행, 즉 박명원(朴明源)이 이끌었던 ‘진하겸사은행’(進賀兼謝恩行)의 활동은 연구의 사각지대에 놓여 온 것 같다.⁹⁾ 그러나 박지원의 ‘열하 경험’은 기본적으로 박명원의 ‘진하겸사은행’이라는 특별한 사행이 낳은 산물이었다. 『열하일기』의 ‘열하 경험’이 박명원 일행의 사행 활동 내용을 반영한 것임은 당연하다. 따라

9) 건륭제가 박명원 일행을 열하로 불러들인 이유를 밝히고자 한 차혜원(2010), 『열하 사절단이 체험한 18세기 말의 국제질서: 변동하는 조공책봉 관계의 증언』, 『역사비평』 93이나 조선·청 관계의 안정기에 평화를 지속시킨 유교권·비(非)유교권 간 ‘분리’의 작동 메커니즘을 박명원 일행의 사행 및 판첸과의 만남을 통해 이해하고자 한 姜東局(2012), 『淸と朝鮮の關係における圏域の分離と融合: 朝鮮使節とバンチェン・ラマの邂逅(1780)を事例に』, 『名古屋大學法政論集』 245 정도가 극소수의 예외가 아닐까 한다. 하지만 이 두 논문은 모두 관련 사실의 인식에서 적잖은 오해를 보이고 있다. 두 논문의 오해를 하나하나 짚을 여유는 없으므로, 중요한 몇 가지만 관련 부분의 각주에서 언급할 것이다. 또한 姜東局은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동문회고』 등 조선의 정부 기록이 박명원 일행과 판첸의 만남에 관한 것을 죄다 ‘은폐’하였다고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자신의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의 고찰을 통해서 판첸과의 만남을 조선의 정부 기록이 ‘은폐’했다는 姜東局의 판단은 사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며, 따라서 그의 논지도 성립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서 『열하일기』의 텍스트 내용을 온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박명원의 사행 활동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지만, 건륭 45년의 ‘진하겸사은행’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¹⁰⁾

게다가 이 글의 고찰을 통해서 드러나겠지만, 박명원의 사행 활동과 『열하일기』의 관계는 단지 전자가 후자의 ‘열하 경험’에 내용을 제공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 박지원은 자료의 정리 및 편집 과정을 거쳐 대략 1783년경 『열하일기』를 일단 탈고한 것으로 추정된다.¹¹⁾ 그는 『열하일기』를 집필하면서 ‘연행록’의 일반적 형식인 일기체를 채택하지 않았다. 압록강을 건넌 6월 24일부터 열하에서 북경에 돌아온 8월 20일까지만을 일기체로 서술하였을 뿐, 그 나머지는 다양한 견문을 내용에 따라 여러 편(篇)으로 분류하여 기술한 것이다. 게다가 서울 출발에서 도강(渡江)까지와 북경에서 돌아오는 여정은 아예 쓰지 않았다. 여행 과정의 견문을 있는 그대로 충실히 옮기기보다는 어떤 의도하에 견문을 취사선택하고 그 의도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배치하고자 했던 것이다.¹²⁾ 여기서 ‘열하 경험’의 텍스트화 과정, 즉 견문의 취사선택 및 구성(plot)에도 박지원의 어떤 의도가 작용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의도의 존재 여부 및 영향 여하는 텍스트 ‘내부’에서 파악하기 어렵다. 이로부터 텍스트 ‘내부’에서 벗어나 박명원의 사행 활동을 들여다볼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진다고 하겠는데,¹³⁾ 이 글에서는 박

10) 사실 개별 사행에 대한 관심 저조는 건륭 45년의 ‘진하겸사은행’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조선의 대명(對明)·대청(對淸) 사행 연구는 대체로 사행 일반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다. 사행의 시간상 변화 양상이나 관련 외교 사안의 역사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행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11) 김명호(1990), 앞의 책, 22쪽.

12) 崔千集(1997), 『熱河日記』의 表現方式과 그 意圖, 『문학과 언어』 18은 『金蔘少鈔』 등 6편에 대하여 박지원의 저술 의도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이 글과는 분석 대상과 접근 방식이 다르긴 하지만, 『열하일기』 연구의 심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취지의 시도가 많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13) 金東錫(2005), 『수사록』과 기타 자료를 통해 읽어보는 『열하일기』, 『대동한문학』

명원 일행의 활동과 관련하여 당시 조선에서 일어난 ‘외부’의 사건이 하나의 컨텍스트를 형성함으로써 ‘열하 경험’의 텍스트화 과정을 규정했을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이 글에서는 먼저 『열하일기』 이외의 사료를 주로 활용하여 박명원 일행의 활동에 관한 고찰을 진행할 것이다. 조선 후기 청과의 공식 외교활동은 통상 외교문서의 형태로 문자화되었는데 박명원 일행의 활동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이에 제2절에서는 『동문휘고』에 수록된 박명원 사행 관련 외교문서를 한데 모아서 그 내용을 개괄한 다음, 당시 청에서 조선에 보낸 문서 가운데 박명원 일행의 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청의 예부가 상례(常例)를 깨고 무단 발송했던 일부 자문(咨文)에 주목할 필요성을 제기할 것이다. 제3절에서는 『승정원일기』 등의 사료를 통해서 박명원 일행의 활동에 관한 보고와 조선 조정의 대응을 살펴볼 것이다. 박명원이 북경을 떠나면서 발송한 장계는 활동 보고의 핵심 문서라 할 수 있는데, 『승정원일기』 등이 이 장계를 잘못된 날짜에 기록했음을 지적함과 아울러 박명원 등의 활동 관련 소식이 서울에 도착한 시점 및 그에 대한 대응으로 사은사 파견이 결정되는 과정을 밝힐 것이다. 제4절에서는 박명원 일행이 건륭제가 국왕 정조(正祖)에게 선물한 것이라며 들고 온 불상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 불상으로 인해 박명원 일행은 ‘봉불지사’(奉佛之使)라는 오명을 쓰게 되는데, 기실 문제의 불상은 관철했던 선물을 황제의 선물로 ‘오해’한 것이었다.

제5절에서는 박명원 일행에 대한 ‘봉불지사’ 혐의를 벗기 위한 일종의 변호론이 『열하일기』에 어떤 내용과 구성으로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박지원은 청에서 조선으로 보낸 일부 자문이 예부의 문서 변조라는 문제를 안고 있었음을 고발하는 한편, 『찰십륙포』에서 박명원 일행

23은 『열하일기』의 내용을 다른 자료와 비교하고 있다. 이는 일단 『열하일기』의 텍스트 ‘내부’에서 벗어난 연구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박명원의 사행 활동에 초점을 맞춘 본격적 분석은 아니다.

이 판첸과 만날 때 수행했던 ‘의례’의 실상을 자세히 묘사하였다. 또한 『찰십륜포』의 말미에 ‘건륭과 판첸의 만남’ 장면을 배치함으로써 ‘봉불지사’ 변호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제6절의 결론에서는 『열하일기』에 텍스트화된 ‘열하 경험’을 박명원 일행에 가해진 ‘봉불지사’ 혐의라는 컨텍스트 위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사료로서 『열하일기』를 다룰 때에는 사료 비판적 자세가 요구된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다.

2. 칠순 진하특사의 외교문서

청의 입관(入關) 이후 황제의 만수절에 대한 조선 국왕의 축하는 매년 연말 파견하는 ‘동지사행’(冬至使行), 정확하게는 ‘삼절연공행’(三節年貢行) 편에 표문(表文: 聖節表)과 방물(方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¹⁴⁾ 건륭 45년이 여느 해와 다를 바 없었다면, 조선은 연말에 파견하는 ‘삼절연공행’을 통해서 칠순 만수절에 대한 표문·방물을 청에 전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황제의 칠순은 청에서 사상 초유의 일대 경사였다. 이에 조선 조정은 건륭 44년 말에 파견한 ‘삼절연공행’ 편에 별도의 진하(進賀) 표문·방물을 전달한 데 이어,¹⁵⁾ 건륭 45년 3월에 또 다시 칠순 만수절에 맞추어 박명원을 정사, 정원시(鄭元始)를 부사, 조정진(趙鼎鎭)을 서장관으로 하는 ‘진하겸사은행’을 특파하기로 결정하였다[이하 박명원 등의 사행은 ‘진하특사’].¹⁶⁾ 순치 2년 이후 최초로 만수절 당일을 겨

14) 청은 순치 원년 11월 조선에 대하여 “삼절(三節)”[“원조(元朝)·동지(冬至)·성절(聖節)"]의 표문·방물을 “원조”, 즉 신년 정월 초하루에 병공(併貢)하도록 하였다(『遣歸世子叙用罷黜官員量減歲幣三節併貢勅』, 순치 원년 11월 19일, 『同文彙考』 原編 권41, pp. 4b-5a).

15) 『賀皇上七旬表』(건륭 45년 정월 1일), 『同文彙考』 原編 권15, pp. 9a-9b.

16) 『承政院日記』 정조 4년 3월 20일 조; 『朝鮮王朝實錄』 정조 4년 3월 20일 조; 『備邊司謄錄』 정조 4년 3월 21일 조.

냥하여 파견된 사행이기도 했던 진하특사 일행은¹⁷⁾ 5월 25일 서울을 떠나 6월 24일 압록강을 건너 8월 1일 북경에 도착하였다.¹⁸⁾

일반적으로 외교문서의 제출과 수령은 대청 사행의 핵심 활동이었다.¹⁹⁾ 조선이 청에 보낸 외교문서는 모두 국왕 명의로 작성되었다. 엄격히 말하자면, 사신은 국왕이 청의 황제에게 제출하는 표문·주문(奏文)이나 청의 예부 등에 보내는 자문을 청 측의 접수 창구(북경에서는 예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을 뿐이다. ‘인신무외교’(人臣無外交)의 원칙에 따라 사신의 독자적인 외교 활동은 금지되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사전에 관련 외교문서를 복수로 준비해 갔다가 북경의 현지 상황에 맞추어 하나를 선택·제출하기도 하였는데, 이런 경우 사신의 상황 판단과 임기응변이 중요했다. 또한 사신은 주로 역관을 통해서 청의 관료 등을 상대로 임무의 성공적인 완수에 필요한 물밑 접촉을 진행하였다. 건륭 45년의 진하특사는 북경 도착 이후 ‘열하로의 초청’이라는 ‘돌발사태’에 맞닥뜨림으로써 종래의 연행사가 경험한 적이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지만, 외교문서의 제출과 수령이 그들의 기본 임무였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외교문서의 제출과 수령 가운데 먼저 제출의 측면을 보자.

진하특사는 ‘진하겸사은행’이라는 정식 명칭 그대로 황제의 칙순에 대한 진하 외에 사은의 임무까지 겸하였다. 이에 따라 그들이 제출한 외교문서는 진하 표문[1건]과 사은 표문[4건], 그리고 몇 건의 부속문서로 이루어졌다. 『동문회고』에서 진하특사가 청에 제출한 표문을 모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17) 순치 2년(1645)의 만수절을 마지막으로, 조선은 청 황제의 만수절 조하(朝賀)에 사신을 파견하지 않았다. 만수절을 축하하는 표문·방물은 매년 연말의 ‘삼절연공행’ 편에 전달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륭 45년의 진하특사 파견은 순치 2년 이후 최초의 만수절 사행이었다고 할 수 있다.

18) 『承政院日記』 정조 4년 5월 25일 조; 정조 4년 6월 28일 조; 정조 4년 7월 4일 조; 정조 4년 9월 17일 조.

19) 김경록(2006), 『조선시대 사행과 사행기록』, 『한국문화』 38, 205쪽.

〈표 1〉 진하특사가 청에 제출한 표문

표 문	날짜(건륭 45년)	출전(『同文彙考』)
「賀聖節表」	8월 13일	原編 권15, pp. 12a-13a
「謝詔書順付表」	5월 25일	原編 권40, pp. 23a-23b
「謝寬免使臣表」	5월 25일	原編 권41, pp. 56b-57a
「謝移准方物表」	5월 25일	原編 권32, pp. 10b-11b
「謝漂人出送表」	5월 25일	原編 권69, pp. 27b-28a

5건의 표문 각각에는 청의 예부에 표문의 상달을 요청하는 자문이 부속되어 있었다.²⁰⁾ 여기에 「사관면사신표」(謝寬免使臣表)와 관련해서는 예부에 보내는 「회자」(回咨) 1건이 추가로 있었다.²¹⁾ 또한 「사이준방물표」(謝移准方物表)와 「사표인출송표」(謝漂人出送表)를 제외한 3건의 표문에는 각각에 대한 방물의 내역을 밝힌 「방물표」(方物表)가 있었다.²²⁾ 그 밖에 3건의 방물 내역을 종합한 「예물총단」(禮物總單)이 있었으므로,²³⁾ 진하특사 일행이 청에 전달한 외교문서는 총 15건에 이른다.

<표 1>의 표문 중에서 사행의 명목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문서는 「하성절표」(賀聖節表)였다. 다른 표문은 모두 진하특사가 서울을 출발한 5월 25일 자였지만, 「하성절표」만은 만수절 날짜에 맞추어 8월 13일 자로 작성되었다. 예년의 경우였다면 이 표문은 건륭 45년 말에 파견하는 ‘삼절연공행’이 전달했을 터였지만, 이번에는 성절 표문만을 따로 빼서 진하특사를 파견했던 것이다.²⁴⁾ 나머지 사은 표문 4건은 대부분 진하특

20) 『同文彙考』 原編 권15, p. 13a; 권40, p. 24a; 권41, p. 57b; 권32, p. 11b; 권69, p. 28a.

21) 『同文彙考』 原編 권41, pp. 55b-56b.

22) 『同文彙考』 原編 권15, p. 13a; 권40, pp. 23b-24a; 권41, pp. 57a-57b.

23) 『同文彙考』 原編 권15, p. 13a.

24) 이에 따라 건륭 45년 말의 ‘삼절연공행’은 예년과 달리 성절(聖節) 표문·방물을 청에 전하지 않았다. 『同文彙考』 原編 권32, p. 12a 참조.

사의 바로 앞 사행, 즉 건륭 44년 말 황인점(黃仁黈)을 정사로 파견했던 ‘삼절연공행’과 관련된 것으로 이 글의 주제와는 별 관계가 없다.²⁵⁾

이번에는 진하특사와 관련하여 청이 조선에 보낸 외교문서를 살펴보자. 『동문회고』에서 진하특사와 관련하여 청의 예부가 조선 국왕에게 보낸 문서를 모두 뽑아 작성 날짜 순서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진하특사 관련 청 예부의 자문

문서	날짜 (건륭 45년)	출전 (『同文彙考』)
「禮部抄錄行在禮部原奏咨」 [#]		原編 권15, pp. 13b-14b
「禮部知會使臣謝摺知道及抄錄賞單咨」 [#]		原編 권15, pp. 15a-15b
「禮部知會查收賀聖節方物永停陳謝方物咨」 [#]	8월 20일	原編 권40, pp. 24a-25a
「禮部知會謝詔書順付表知道咨」 [*]	8월 26일	原編 권40, p. 24a
「禮部知會謝移准表知道咨」 [*]	8월 26일	原編 권32, p. 11b
「禮部知會謝漂人出送表知道咨」 [*]	8월 26일	原編 권69, p. 28a
「禮部知會賀七旬聖節表知道咨」 [*]	8월 28일	原編 권15, pp. 13a-13b
「禮部知會謝寬免使臣表知道咨」 [*]	8월 28일	原編 권41, p. 57b
「禮部知會賜物及頒賞使臣咨」	(9월 4일)	原編 권15, pp. 15b-16b
「禮部知會琉球國漂人轉解北京咨」	9월 15일	原編 권69, pp. 28a-29a

25) 「謝詔書順付表」는 건륭 45년 정월 초하루에 반포한 조서를 황인점 일행에게 순부(順付)함으로써 조선의 칙사 접대 부담을 덜어준 것에 대한 사은 표문이었다. 「謝寬免使臣表」는 건륭 45년 정월 황인점 일행의 마부가 일으킨 실화(失火) 사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조치에 대한 사은 표문이었다. 진하특사는 화재 사건 해명을 위한 주본(奏本)도 함께 준비해 갔지만 박명원이 현지에서 주본의 제출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사은 표문만 제출하였다(『承政院日記』 정조 4년 9월 17일 조). 「謝移准方物表」는 황제의 칙술을 축하하는 진하 표문에 딸려 황인점 일행이 전달한 방물을 해마다 전달하는 “정공(正貢)”으로 총당하라는 건륭제의 지시에 대응한 것이었다. 끝으로 「謝漂人出送表」는 황인점의 사행과는 무관한 것으로, 건륭 44년 12월 봉황성(鳳凰城) 관내 바닷가에 표류한 조선인 어부 8명을 송환해 준 데 대한 사은 표문이었다.

<표 2>에서 8월 26일 또는 28일 자로 작성된 자문 5건에는 ‘*’ 표시를 붙였다. 이 5건은 <표 1>의 각 표문을 황제에게 올려 “알았다[知道了]”라는 유지(諭旨)를 받았음을 알린 것으로 여기서 따로 내용을 검토할 필요는 없다. 끝에서 두 번째에 보이는 「예부지회사물급반상사신자」(禮部知會賜物及頒賞使臣咨)[물품 사여 및 사신에 대한 반상(頒賞)을 알리는 자문]는 『동문회고』에 작성 날짜가 생략되었으나, 9월 3일 황제에게 보고하고 9월 4일 “의논한 대로 하라”[依議]는 유지를 받았다는 내용에 근거하여 9월 4일 자로 추정할 수 있다. 비록 첫머리에서 8월 13일 진하특사 일행에 대한 황제의 ‘가상’(加賞), 즉 정례(定例) 외의 특별 상사(賞賜)도 언급하였으나, 이 자문의 취지는 조선 사신에게 규정대로 선물을 주고[“照例賞賜”] 연회를 베풀었음[“照例筵宴二次”]을 알리는 데 있었다. 맨 마지막의 「예부지회유구국표인전해북경자」(禮部知會琉球國漂人轉解北京咨)[유구국에 갔던 표류민을 북경으로 보냈음을 알리는 자문]는 유구(琉球)에서 조선인 표류민을 복건(福建)을 거쳐 북경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송환 예정 표류민 남녀 12명의 명단을 통보한 것이다.

이상의 자문 7건은 청이 조선에 보내는 ‘일상’적 성격의 외교문서였다. 또한 예부가 조선에 보내는 자문은 조선 사신이 북경에 와 있는 경우 사신의 귀국 편에 맡겨서 보내는 것이 상례였다. 정사 박명원과 부사 정원시가 9월 17일 북경을 떠나면서 연명으로 올린 장계[이하 「9.17 장계」]를 보면, 9월 15일 오문(午門) 앞에서 상물(賞物)을 받은 뒤 “회자”(回咨) 6건을 수령하였다고 한다.²⁶⁾ 이 6건은 <표 2>의 8월 26일부터 9월 4일 까지의 자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9.17 장계」의 말미에는 조선인의 유구 표류에 관한 예부의 자문을 수령하였기에 비변사로 베껴 보낸다는 내용이 보인다. <표 2>에서 보듯이 이 자문의 작성 날짜는 9

26) 『承政院日記』 정조 4년 9월 17일 조. 이 장계는 『朝鮮王朝實錄』 정조 4년 9월 17일 조에도 실려 있다. 이하 「9.17 장계」의 내용을 언급할 때에는 따로 출처를 밝히지 않기로 한다.

월 15일이었다. 예부는 9월 15일 6건의 자문을 건넨 뒤, 아마도 16일에 이 자문을 추가로 건넨 것 같다. 「9.17 장계」에 더 이상의 자문 수령에 관한 언급이 없으므로 박명원 등이 직접 수령한 외교문서는 지금까지 언급한 7건에 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표 2>에서 보듯이 『동문회고』에는 진하특사와 관련하여 예부가 보낸 자문이 10건 수록되어 있다. 예부가 박명원에게 건넨 자문의 위의 7건이었다면, <표 2>에서 ‘#’ 표시를 붙인 나머지 자문 3건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조선에 전달된 것일까? 이 자문 3건의 내용과 전달 과정은 후술 내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자문 3건의 전달 경위를 푸는 실마리는 「9.17 장계」에서 찾을 수 있다. 장계를 보면, “견공(鑣貢)과 황제가 열하에서 반상(頒賞)한 (일에 관한) 문서는 8월 20일에 이미 병부(兵部)로부터 발송”하였다는 서술이 보인다. 박명원은 상례대로 자신에게 건네지 않았을뿐더러 심지어 알리지도 않은 채 문서를 병부로 넘겨 역전(驛傳)으로 발송한 까닭을 예부에 가서 따졌다. 예부는 열하의 행재예부가 황제의 유지에 따라 관련 사실을 조선에 먼저 알리라고 시켰기 때문이라고 대꾸하였다.²⁷⁾ 3건의 자문 중 「예부지회사수하성절방물영정진사자」(禮部知會查收賀聖節方物永停陳謝方物畚)[성절 축하 방물을 접수하며 (향후) 사은 방물은 영원히 정지시킴을 알리는 자문: 이하 「영정진사방물자문」]는 작성 날짜가 8월 20일로 명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견공”, 즉 사은 공물의 면제에 관한 내용이므로 예부가 상례를 무시하고 발송한 문서였음이 확실하다.

이제 남은 것은 「예부초록행재예부원주자」(禮部抄錄行在禮部原奏畚)[행재예부의 원주(原奏)를 초록(抄錄)한 자문: 이하 「초록원주자문」]와

27) 상례를 어긴 예부의 문서 발송은 박지원도 비판하고 있다(朴趾源, 『熱河日記』 「行在雜錄」, p. 192).

『예부지회사신사접지도급초록상단자』(禮部知會使臣謝摺知道及抄錄賞單咨)[사신의 사은 정문에 (황제가) ‘알았다’고 하였음을 알리고 상물 목록을 초록한 자문: 이하 「사신사접자문.」이다. 『동문회고』는 두 자문의 날짜를 생략한 채 8월 28일 자인 『예부지회하칠순성절표지도자』(禮部知會賀七旬聖節表知道咨)[칠순 성절을 축하하는 표문에 (황제가) ‘알았다’고 하였음을 알리는 자문] 다음에 실었다. 『동문회고』의 수록 순서만 놓고 보면 두 자문의 작성 날짜 역시 8월 28일로 추정할 수 있으나, 그렇게 추정하는 경우 박명원이 직접 수령한 자문은 7건이 아니라 9건이 되어야 한다. 또 장계 내용에 따르면 8월 20일 예부가 발송한 자문은 “견공”과 “반상”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견공”에 관한 『영정진사방물자문』 외에 “반상” 관련 자문이 추가로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동문회고』가 날짜를 생략한 두 자문의 내용이 만약 열하에서 있었던 “반상” 내지 우대 조치와 관계가 있으며 행재예부가 처리한 사안이었다면, 두 자문은 8월 20일에 발송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초록원주자문』은 황제에게 3건의 상주를 올렸다는 행재예부의 자문을 받았으니 각 상주를 초록하여 조선 국왕에게 알린다는 내용이며, 3건의 상주 및 각각에 대한 황제의 간단한 유지[“알았다”]가 『원주(原奏)』라는 제목으로 첨부되어 있다. 첨부된 『원주』에 초록된 행재예부의 상주 3건은 “조선국사신래도열하일접”(朝鮮國使臣來到熱河一摺)[조선국 사신이 열하에 도착했음을 아뢴 상주], “조선국사신공사천은일접”(朝鮮國使臣恭謝天恩一摺)[조선국 사신이 천자의 은혜에 삼가 감사하였음을 아뢴 상주], “반선액이덕니급여사신물건주문일접”(班禪額爾德呢給與使臣物件奏聞一摺)[판첸 이르더니가 사신에게 물건을 주었음을 아뢰는 상주: 이하 「판첸급여사신주접.」 등인데, 각각에 대하여 유지가 내린 날짜는 8월 9일, 8월 10일, 8월 12일이었다.²⁸⁾ 3건의 상주 가운데 뒤의 2건은 내용상

28) 「原奏」, 『同文彙考』原編 권15, pp. 13b-14b.

황제의 “반상”과 직접 관련은 없으나, 조선의 진하특사에 대한 우대 조치 또는 판첸의 선물에 관한 것이다.

다음으로 「사신사접자문」은 박명원 등이 황제의 “가상”에 감사한다는 “정문”(呈文)을 행재예부에 제출하여 황제에게 대신 아뢰어 줄 것[“代爲轉奏”]을 요청하였기에 상주하였고, 이에 대해 8월 14일 황제가 “알았다.”라는 유지를 내렸다는 내용이다. 행재예부는 이 상주와 유지를 자문으로 꾸며 북경으로 보냈고, 북경 예부에서는 여기에 “가상”의 내역을 담은 상단(賞單)을 덧붙인 자문을 만들어 조선에 보냈다.

이처럼 「초록원주자문」과 「사신사접자문」은 모두 진하특사의 열하체류 기간[8월 9일~14일]에 있었던 우대 조치 내지 “반상” 관련 사실을 행재예부가 북경에 알린 것을 북경의 예부가 다시 조선 국왕에게 통보한 것이다. 8월 20일로 날짜가 명기된 「영정진사방물자문」 역시 8월 12일 건륭제가 내린 유지를 마찬가지로 조선에 알린 것이었다.²⁹⁾ 따라서 「초록원주자문」과 「사신사접자문」의 작성 날짜는 8월 28일이 아니라, 「영정진사방물자문」과 마찬가지로 8월 20일이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예부의 8월 20일 자 자문 3건은 박명원이 직접 수령한 자문 7건과는 성격이 달랐다. 후자는 애초에 조선이 보낸 표문을 규정에 따라 ‘기계적’으로 처리한 문서, 어떤 사행이나 수반되기 마련인 예물 및 연회 관련 문서, 표류민 송환 시 절차상 발송하는 문서 등이었기 때문에 예부가 사례를 준수하여 박명원에게 직접 교부하였다. 반면에, 전자는 열하에서 건륭제가 진하특사를 상대로 베푼 특별 우대 조치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 때문에 행재예부는 북경의 예부에 이런 사실을 조선에 알리도록 하였고, 예부에서는 박명원 일행의 귀국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8월 20일에 문서를 병부로 넘겨 역전을 통해 발송했던 것이다.

29) 이 유지는 『淸實錄』 건륭 45년 8월 戊午 조에도 실려 있다.

8월 20일 예부가 발송한 3건의 자문 중에서도 특히 「초록원주자문」과 「사신사접자문」은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두 자문은 예부의 상례를 벗어난 발송이라는 문제 외에 판첸과의 만남이나 행재예부의 문서 내용 변조 등 진하특사의 활동과 관련하여 매우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박지원이 『열하일기』에 남긴 진하특사 활동 관련 기록도 이 두 자문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후술). 아래의 제3절에서는 진하특사의 활동에 관한 소식이 어떻게 조선 조정에 전달되었고 조선 조정은 그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였지를 살펴볼 것인데, 8월 20일 예부의 자문 발송은 특히 조선 조정의 사은사 파견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

3. 진하특사의 활동 보고와 조선 조정의 대응

5월 25일 진하특사가 서울을 떠난 이후 조선 조정은 오직 서울로 들어오는 문서를 통해서만 그들의 활동 내역을 파악할 수 있었다. 북경으로 가져간 표문·주문 등 외교문서에 대한 청 측의 공식 회답 문서는 보통 귀국하는 사신이 수령하였다. 이 경우 조선 조정이 사행의 경과나 결과를 파악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이래서는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서울의 조정에서 신속히 대처하기가 어려웠다.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신은 귀국 전에 서울로 장계를 보냈는데, 건륭 45년의 진하특사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서울을 떠난 이후 진하특사가 올린 장계는 여러 건이었지만, 여기에서는 앞에서 몇 차례 언급한 바 있는, 북경을 떠나면서 서울로 보낸 장계, 즉 「9.17 장계」에 주목하고자 한다.³⁰⁾ 진하특사의 주요 활동을 날짜별로

30) 『승정원일기』에서는 「9.17 장계」에 앞서 박명원·정원시가 올린 장계를 5건 더 찾을 수 있다(『承政院日記』 정조 4년 6월 12일 조; 6월 13일 조; 6월 20일 조; 6월 28일 조; 7월 4일 조). 각 장계의 내용을 보면 『승정원일기』의 날짜가 장계의 발송

보고한 『9.17 장계』는 공식 기록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 이 장계에서 열하 체류 기간 동안의 활동 내역을 뽑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³¹⁾

<표 3> 진하특사의 열하 체류 기간 활동 내역

날짜	활동 내역
8월 9일	진시(辰時) 무렵 박명원 일행은 열하에 도착, 승덕부(承德府) 태학(太學)에 투숙하였다. 황제가 특별히 군기장경(軍機章京) 소림(素林)을 보내어, 조선 사신의 열하 방문은 사상 최초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만수를 진하(進賀)하러 왔으므로 정사는 2품, 부사는 3품 관원의 반 열에서 의례에 참석하도록 하는 “격외지은”(格外之恩)을 베푸는 유지를 전하였다. 저녁이 되자 예부상서가 통관(通官)을 보내어, 황제로부터 “광절지은”(曠絕之恩)을 입었으니 “고사지의”(叩謝之意)를 담은 정문을 써서 제출하면 황제에게 대신 상주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박명원은 “배신(陪臣)이 은명(恩命)에 사사(私謝)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였으나, 예부에서는 황제가 특별히 관원을 보내기까지 하였는데 “사신이 어찌 문서로 먼저 고사(叩謝)할 수 없느냐?”라고 하면서 거듭 재촉하였다. 박명원은 예부의 태도를 보건대 아무래도 예부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닌 듯하여 부득이하게 “고사지의”를 대략 담아 정문을 제출하였다.
8월 10일	새벽에 박명원은 전날의 정문을 담은 상주에 대하여 건릉제가 내린 “알았다.”라는 유지에 사은하기 위하여 피서산장으로 갔다. 이날 황제는 박명원에게 “삼기찬”(三器饌)을 “반사”(頒賜)하였고, 박명원은 사은 의례를 마친 후 숙소로 돌아와서 휴식을 취하였다.

일이 아닌 서울 도착일임을 알 수 있다. 이 5건의 장계는 청에 제출할 외교문서의 사대(査對)와 조선 출국 및 청 입국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진하특사의 본격적인 활동 내역에 관한 보고는 아니었다. 박명원 일행의 활동에 관한 본격적인 보고는 『9.17 장계』가 최초이며 가장 자세하다. 한편 노이점(盧以漸)의 『수사록(隨槎錄)』을 보면, 박명원 일행은 6월 4일 황강(黃岡)과 6월 6일 평양에서 외교문서의 사대를 실시하였다고 한다(權廷雄(1999), 『盧以漸의 『隨槎錄』: 解題 및 原文 標點』, 『경북사학』 22, 150-151쪽). 문서를 사대할 때마다 장계를 보냈다면 황강과 평양에서 보낸 장계도 있었을 터이지만 『승정원일기』에는 보이지 않는다.

31) 『9.17 장계』에는 책문을 통과해서 열하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과 열하에서 북경에 돌아온 이후 9월 17일 북경을 떠날 때까지의 활동에 관한 보고가 포함되어 있지만, 지면을 절약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생략하였다.

날짜	활동 내역
8월 11일	<p>새벽 박명원은 오늘 황제가 반드시 인견(引見)하리라는 제독(提督)의 말을 듣고 피서산장에 가서 대기하였다. 또 다시 “삼기찬”의 “반사”가 있었다. 묘시(卯時)에 황제가 궁문(宮門)으로 나오자, 예부의 만상서(滿尙書) 덕보(德保)가 삼사(三使)와 세 역관을 이끌고 어좌 앞에 무릎을 꿇었다. 황제가 “국왕은 평안한가?”라고 묻자, 박명원은 “평안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 가운데 만주어를 할 수 있는 자가 있는가?”라고 황제가 다시 묻자, 청의 통관들이 주저하는 사이 청학(淸學) 윤갑중(尹甲宗)이 “대략 이해합니다.”라고 답하였다. 황제가 미소를 지으며 물러갈 것을 명하였으나, 박명원은 황제가 아직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대열에 서서 기다렸다. 이때 황제가 군기장경을 시켜, “너희 나라에서도 부처를 공경하는가? 사찰은 몇 군데 있는가? 관제모 또한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국속(國俗)이 본디 부처를 숭상하지 않으나, 사찰이라면 외방(外方)에 간혹 있기는 합니다. 관제모는 성 밖에 두 곳 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황제가 안으로 돌아간 뒤 박명원은 숙소로 돌아왔는데, 황제가 또 다시 생여지주(生荔枝酒) 1병을 내렸다.</p>
8월 12일	<p>황제가 희대(戲臺)에 임어(臨御)하여 연희 공연을 베풀고, 문·무 3품 이상 관원에게 구경하도록 하였는데, 조선 사신도 같이 “관희”(觀戲)하라고 명하였다. 박명원은 새벽에 입궐하여 배정된 반차에서 공연을 보았다. 공연은 묘시에 시작하여 미정(未正)에 끝이 났다. 황제는 “관희”에 참석한 신하들과 박명원 등에게 단필(緞疋) 등의 선물을 주었다.</p>
8월 13일	<p>박명원은 만수절 하례에 참석한 다음, 또 다시 “희장”(戲場)에 들어갔다. 황제는 박명원에게 차를 하사하였다. 미정에 “희장”을 나오자 예부가 궐내에 대기하라고 했는데, 황제가 국왕에 대한 “별예단”(別禮單) 18필을 “특송”(特送)하고, 삼사와 종관(從官)에게 단필(緞疋)을, 종인(從人) 64명에게 은 2냥씩을 하사하였다. 이에 대하여 예부는 또 다시 박명원에게 사은 정문 제출을 요구하였다. 박명원은 이번에는 국왕에게 보낼 “별예단”이 있기 때문에 사신의 “사사”(私謝)는 더욱 불가하다고 하면서 버텼다. 그러나 예부는 사신의 별상(別賞)에 대한 정문 제출은 그만둘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였다. 박명원은 할 수 없이 “별상을 삼가 받았다는 뜻”만 적어 정문으로 제출하였다.</p>

날짜	활동 내역
8월 14일	전일에 올린 정문과 관련하여 10일과 마찬가지로 사은을 한 뒤 또 다시 “희장”에 들어갔다. 이 공연은 닷새를 해야 끝이 난다는 말을 들었다. 이 날도 역시 미정에 “희장”을 나왔다. 그 뒤로는 지시에 따라 후원(後園)의 “매포처”(埋砲處)에 대기하다가 황제가 “장전”(帳殿)에 임어하자 “화포(火砲) 및 잡희(雜戲)”를 관람하였다. 해가 진 뒤 관람이 끝나자, 예부가 내일 북경으로 돌아가라는 황제의 유지가 막 내려졌음을 전하였다.
8월 15일	열하를 떠났다(20일 북경 도착).

<표 3>에서 정리한 진하특사의 활동 내역 가운데 8월 11일~14일의 주요 활동은 청의 실록이나 기거주(起居注) 등의 기록과도 부합한다. 8월 11일 건륭제는 박명원을 비롯한 조선 사신 3인을 피서산장 궁문에서 접견하였다. 8월 12일~16일의 닷새에 걸쳐 건륭제는 피서산장 권아승경(卷阿勝境)에서 만수절 축하를 위해 열하에 집결한 이들에게 “다과”(茶果)를 내렸는데, 이 가운데 12일~14일의 사흘은 박명원 등 3인이 참석자 명단에 올라있다. 청의 실록과 기거주는 “사다과”(賜茶果)만 언급했으나, 『9.17 장계』를 통해서 그것이 실은 “관희”(觀戲)와 함께 이루어졌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8월 13일에는 담박경성전에서 만수원(萬樹園) 대악차(大幄次)[<표 3>의 “장전”(帳殿)]에 거둥하여 “사관화희”(賜觀火戲)한 일이 있었다. 이 두 행사의 참석자 명단에도 박명원 등 3인이 올라있다.³²⁾

『9.17 장계』의 진하특사 활동 내역이 청 측의 기록과 부합한다는 점 외에, 후술 내용과 관련하여 특히 기억해 두어야 할 점이 두 가지 있다. 첫째는 판첸과의 만남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황제를 알현한 후 군기장경이 불교 사찰과 관제묘에 관한 질문을 던진 사실만 적었

32) 『清實錄』 건륭 45년 8월 丁巳~壬戌 조; 『乾隆四十五年巡幸熱河起居注』, 『清宮熱河檔案』 4, 中國檔案出版社, 2003, pp. 490-492.

을 뿐이다. 앞서 살폈듯이 관철평과 만난 사실은 8월 20일 예부가 발송한 자문에도 등장하며, 박지원의 『열하일기』에도 관련 기록이 풍부하나, 박명원은 「9.17 장계」에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것이다. 둘째는 박명원이 장계의 말미에서 “별단”(別單) 1건을 따로 올리며, 정사의 군관 주명신(周命新), 부사의 군관 이서구(李瑞龜), 역관 윤갑중 등에게 장계를 건네 먼저 보낸다고 덧붙였다는 점이다. 이 사실은 장계의 말미에 등장하는 관계로 <표 3>에 정리하지는 않았으나 이 글의 후술 내용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9.17 장계」의 발송에 앞서 박명원이 서울로 보낸 장계는 6월 27일 자가 마지막이었다. 따라서 6월 27일 자 장계가 서울에 도착한 7월 4일 이후 「9.17 장계」가 서울에 올 때까지 조선 조정은 진하특사의 활동에 관한 소식을 접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있다.³³⁾ 그런데 『승정원일기』에서 6월 27일 자까지의 장계는 모두 서울 도착일 기사로 수록되었지만, 유독 「9.17 장계」만은 도착일이 아닌 발송일, 즉 9월 17일 조에 수록되어 있다. 『조선왕조실록』 역시 9월 17일 조에 이 장계의 내용을 실었다. 9월 17일 북경을 떠날 때까지의 상황을 전하는 장계가 같은 날 서울에 도착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다. 두 연대기 자료의 날짜 오류가 분명하다. 이 오류를 바로잡으려면 장계의 서울 도착일을 확인해야 할 터인데,³⁴⁾ 이에 앞서 진하특사가 북경을 떠난 직후 조선 조정에서 사은사 파견을 결정하는 과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9.17 장계」가 서울에 도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렸을 것이다. 그런데도 『승정원일기』와 『조선왕조실록』에는 조선 조정이 9월 20일부

33) 『承政院日記』 정조 4년 7월 4일 조.

34) 진하특사의 바로 앞 사행이었던 황인점 일행이 건륭 45년 2월 27일 북경을 떠나면서 올린 장계는 21일이 지난 뒤인 『承政院日記』 정조 4년 3월 18일 조에 실렸다. 서울 도착까지 비슷한 시일이 걸렸다면, 「9.17 장계」는 아마도 10월 8일을 전후하여 서울에 도착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9.17 장계」는 실제로 10월 9일 서울에 도착하였다.

터 진하특사 파견의 사후 대응 조치로 사은사 파견을 준비하는 기사가 보이기 시작한다. 즉, 조선 조정은 9월 20일 영의정 김상철(金尙喆)의 제안으로 얼마 후 파견할 금년의 “절행”(節行)[‘삼절연공행’: 당시 ‘동지사’로 통칭]에 사은사 임무를 겸하게 한다는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같은 날 사신 인선도 이루어졌다. 이당(李塘)을 정사, 이승호(李崇祐)를 부사로 삼았고, 서장관으로는 윤장렬(尹長烈)을 보내기로 하였다.³⁵⁾

현존 『승정원일기』와 『조선왕조실록』을 따라가면, 9월 20일 사은사 파견 논의가 9월 17일 조 박명원의 장계 다음에 등장한다. 자연스럽게 『9.17 장계』가 사은사 파견 결정을 이끈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 그러나 『9.17 장계』의 9월 17일 조 수록이 분명한 오류인 이상, 9월 20일의 사은사 파견 논의는 뜬금없는 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사은사 파견 논의의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이와 관련하여 9월 20일 김상철이 의주부윤의 장계를 언급한 것이 눈길을 끈다.³⁶⁾ 당시 의주부윤의 장계 내용은 발견할 수 없지만, 조선 조정은 이를 통해서 진하특사의 활동과 관련된 모종의 소식을 접수하였고, 그 소식에는 조선 조정이 사은의 뜻을 표시해야 할 일이 언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의주에는 열하 또는 북경으로부터 어떤 문서가 도착했던 것일까? 여기서 8월 20일 예부가 발송한 3건의 자문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이 무렵 의주에 진하특사 관련 소식을 전했을 문서는 이들 자문 3건 외에는 없었고, 앞에 서술하였듯이 이 3건의 자문에는 진하특사 일행에 대한 건릉제의 우대 조치와 국왕에 대한 특별 사여가 언급되어 있었다. 조선 조정은 아마도 의주부윤의 장계를 통해 이들 자문 3건의 내용을 접하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사은사 파견을 논의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10월 9일에 이르러 조선 조정에서는 ‘동지사’에게 사은사 임무

35) 『承政院日記』 정조 4년 9월 20일 조; 『朝鮮王朝實錄』 정조 4년 9월 20일 조.

36) 『承政院日記』 정조 4년 9월 20일 조.

를 겸하게 하려던 당초의 입장을 재고하고 있다. 이날 국왕 정조는 진하특사 일행이 무사히 귀로에 올랐음을 다행으로 여긴다면서, 황제가 다섯 차례나 “인견”하는 등 전에 볼 수 없었던 우대를 베풀어 주었으니 마땅히 “사은지거”(謝恩之擧)가 있어야겠다고 하였다. 이어서 사은사 임무를 ‘동지사’에게 “겸부”(兼付)할지, 아니면 사은사를 “별송”(別送)할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결국 “피국(彼國)의 접대”가 심상(尋常)하지 않았으므로 사은사를 “별송”하자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에 따라 “단사”(單使)로 바뀐 ‘동지사’의 삼사를 추가로 인선할 필요가 생겼고, 10월 11일 서유경(徐有慶)을 정사, 신대승(申大升)을 부사, 임제원(林濟遠)을 서장관으로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³⁷⁾

10월 9일의 논의 과정에 언급된 사실들은 「9.17 장계」가 도착하지 않고선 알 수 없는 것이었다. 특히 정조가 언급한 다섯 차례의 “인견”이란, 8월 11일의 최초 알현 외에 8월 12일~14일 사흘 동안의 관희(3회)와 14일의 불꽃놀이 참석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표 3> 참조). 실제로 10월 9일 김상철 등은 사은사 “별송”을 결정한 “성교(聖敎)의 지당”함을 언급하면서, “신 등이 선래(先來)의 말을 들으니, 황제의 인견이 한두 번에 이르지 않았고, 연회를 베푸는 날 같으면 반드시 불러 만나고 사찬(賜饌)까지 하여, 그 접대한 바가 극도로 충실했다고 합니다.”라고 말하였다.³⁸⁾ 이로부터 사은사 “별송” 결정의 계기가 된 것은 “선래”가 전한 소식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선래”란 물론 박명원이 「9.17 장계」를 건네 먼저 출발시킨 주명신, 이서구, 윤갑중 등을 가리킨다. 즉, 「9.17 장계」는 10월 9일 서울에 도착했던 것이다.³⁹⁾

이처럼 사은사 “별송”이 확정된 이후, 10월 23일에 이르러 10월 20일

37) 『承政院日記』 정조 4년 10월 9일 조; 『朝鮮王朝實錄』 정조 4년 10월 11일 조.

38) 『承政院日記』 정조 4년 10월 9일 조.

39) 한편 국왕 정조는 10월 17일 윤갑중을 불러들여 진하특사의 소식을 물었다(『承政院日記』 정조 4년 11월 17일 조).

압록강을 건너 입국였음을 보고하는 박명원의 장계가 도착하였다.⁴⁰⁾ 이어서 박명원 일행은 10월 27일 서울에 입성하였고, 국왕 정조는 곧바로 이들을 소견(召見)하였다.⁴¹⁾ 이튿날인 10월 28일 이당이 이끄는 사은사 일행이 서울을 떠났다. 서유경이 이끄는 ‘동지사’ 일행이 서울을 떠난 것은 11월 2일이었다.⁴²⁾ 그리고 진하특사의 서장관 조정진은 11월 5일에 문견사건(聞見事件)을 제출하였다.⁴³⁾

4. 불상 문제와 ‘봉불지사’(奉佛之使)

건륭 45년 8월 열하에서는 조선이 사은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는 우대 조치가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진하특사 및 조선 조정의 입장에서 그야말로 처치하기 곤란한 골칫거리도 안겨주었으니, 그것은 바로 ‘금불’(金佛)이었다. ‘금불’ 문제는 『조선왕조실록』 9월 17일 조에 처음 등장한다. 이 기사의 내용은, 황제가 장수를 기원하는 뜻으로 “금불 하나” [金佛一軀]를 사신에게 맡겨 보냈다는 보고를 듣고 국왕이 불상을 “묘향산의 불사(佛寺)”에 안치하라고 사신에게 “치유”(馳諭)하였다는 것이다.⁴⁴⁾ 그러나 「9.17 장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기사가 실록의 9월 17일 조에 실린 것은 오류이다. 9월 17일 이전에 진하특사의 활동 소식을 알리는 문서가 서울에 도착한 적은 없기 때문이다.⁴⁵⁾

40) 『承政院日記』 정조 4년 10월 23일 조.

41) 『承政院日記』 정조 4년 10월 27일 조.

42) 『同文彙考』 補編 권7 『使行錄』, pp. 53a-53b.

43) 『承政院日記』 정조 4년 11월 5일 조; 『日省錄』 정조 4년 11월 5일 조; 『進賀兼謝恩行書狀官趙鼎鎮聞見事件』, 『同文彙考』 補編 권6, pp. 23a-25b.

44) 『朝鮮王朝實錄』 정조 4년 9월 17일 조.

45) 또한 이 기사에서 ‘금불’은 황제가 보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차혜원(2010), 앞의

그렇다면 조선 조정에서는 건륭제가 주었다는 ‘금불’의 존재를 언제 알았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에 앞서, 이 ‘금불’이 서울에서 어떤 사태를 초래했는지를 보자. 박명원이 10월 27일 국왕에게 복명(復命)한 지 열흘이 지난 11월 8일, 성균관 유생들이 학업을 중지하고 집단 행동[권당(捲堂)]에 나서는 사태가 일어났다. 권당에 나선 유생들은, “이번에 사신이 돌아올 때 금불을 받아온 일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본디 유교를 숭상하고 도(道)를 중시함으로써 중화(中華)로부터 공경과 증시를 (받았는데), 이제 이번 전대지행(專對之行)[박명원 일행을 지칭: 인용자]이 사악하고 더러운 물건[邪穢之物]을 지니고 왔다. (이는) 다만 우리 국가에 치욕을 끼칠 뿐만 아니라, 또 장차 천하 후세의 비웃음을 받을 것이다.”라면서 박명원 일행을 “봉불지사”(奉佛之使)라고 지탄하였다.⁴⁶⁾

사태가 이렇게 되자, 11월 12일 부사 정원시가 이 일은 한 번 폭발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었다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불상을 받아온 경위를 밝히면서도 성균관 유생들의 “원칙을 지키는 주장”[守經之論]에 대하여 자신의 과오를 인정한다는 상소를 올렸다. 그러나 정조는 인책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⁴⁷⁾ 이어서 박명원 역시 사건의 경위를 밝히는 가운데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처벌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정조는 이 일은 “추제”(追提)할 필요가 없으니 박명원에게 안심하고 사직하지 말라고 하였다.⁴⁸⁾

‘봉불지사’라는 성균관 유생들의 비난 앞에서 박명원과 정원시는 과오

논문은 이 기사를 근거로, 건륭제가 “사절단을 통해 조선왕 정조에게 직접 금불상을 하사”하였다고 하고 건륭제의 금불상 선물 의도를 밝히고자 하였다(344쪽). 그러나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사실 이 불상은 건륭제가 준 것이 아니었다. 한편 이 기사에서는 ‘금불’의 수량이 하나였다고 적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각주 59)의 서술 참조.

46) 『承政院日記』 정조 4년 11월 8일 조.

47) 『朝鮮王朝實錄』 정조 4년 11월 12일 조.

48) 『承政院日記』 정조 4년 11월 12일 조.

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 유생들의 비난을 정면으로 반박할 여지란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조가 이 일을 문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사태는 더 확산되지 않았다.⁴⁹⁾ 정조는 진하특사 일행이 “불상을 받들고” 귀국한 데에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것 같다. 그렇다면 조선 조정에서 황제의 ‘금불’ 선물 사실과 박명원이 그 ‘금불’을 받은 경위를 처음 인지한 시점은 언제였을까?

오류가 분명한 실록의 9월 17일 조 기사를 배제하면, 사료상 ‘금불’의 처리에 대한 언급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승정원일기』의 10월 23일 조 기사이다. 이 기사를 보면, 국왕이 “황제가 보낸 금불은 어떻게 처치하면 좋겠는가?”라고 묻자, 정민시(鄭民始)는 사신이 돌아오는 길에 역관 한 사람을 정해서 “영변(寧邊) 향산(香山)의 정결한 장소”로 보내자는 것이 조정의 공론이라고 답하였다. 이에 국왕은 사신 일행에게 서둘러 통지하여 “절대로 그것[금불: 인용자]이 서울에 입성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였다.⁵⁰⁾ 이로부터 나흘 뒤인 10월 27일에 복명한 박명원은, “황제가 보낸 금불은 과연 어떻게 처리하였는가?”라는 국왕의 질문에, “피국(彼國)에서는 남의 장수를 기원할 때 반드시 금불을 서로에게 줍니다. 그러므로 이번 금불의 출송(出送) 역시 전하를 위하여 축수(祝壽)하려는 본의(本意)가 있으나 신이 도중에 이미 영변 향산에 안치하라는 연교(筵敎)를 엮드려 받들었기에 역관 한 명으로 하여금 향산의 정결한 사찰에 송치하였습니다.”라고 답하였다.⁵¹⁾ 이로부터 박명원이 서울로 오는 도중 10월 23일 국왕이 내린 지시에 따라 불상을 묘향산으로 송치했음을 알 수 있다.

49) 3년 뒤인 건륭 48년(1783) 6월 하순 박명원은 ‘동지겸사은행’의 정사로 임명되었다(『承政院日記』 정조 7년 6월 24일 조). 박명원은 3년 전의 과오와 질병을 이유로 사임을 요청하였는데, 정조는 이번에도 지난 일을 “추제(追提)”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承政院日記』 정조 7년 7월 2일 조). 그러나 결국에는 질병을 이유로 박명원을 면직하고 황인점을 정사로 임명하였다(『朝鮮王朝實錄』 정조 7년 7월 5일 조).

50) 『承政院日記』 정조 4년 10월 23일 조.

51) 『承政院日記』 정조 4년 10월 27일 조.

조선 조정에서는 ‘금불’의 처리 방침을 정한 10월 23일 이전에 “황제가 보낸 금불”의 존재를 알았을 것이다. 그리고 황제가 국왕에 대한 특별 선물로 ‘금불’을 보냈다면 청은 조선에 보낸 문서에 그 사실을 분명히 언급했을 것이다.⁵²⁾ 그러나 조선의 진하특사를 맞이하여 건륭제가 국왕에게 선사한 것은 “가상(加賞)으로 준 “단(緞) 18필”과 “조례상사(照例賞賜)로 준 말 1필을 비롯한 여러 물품이 있었을 뿐,⁵³⁾ ‘금불’은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때까지 서울에 도착한 「9.17 장계」나 선래군관의 보고에도 “황제가 보낸 금불”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오직 8월 20일 예부가 발송한 자문에 첨부된 「원주」에 판첸이 선물한 “동불”(銅佛)의 존재만 보일 뿐이다.⁵⁴⁾ 그렇다면 “황제가 보낸 금불”이란 혹 판첸이 선물한 ‘동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
- 52) 혹 건륭제가 ‘금불’을 보내고도 조선이 ‘배불의 나라’임을 고려하여 문서에 밝히지 않은 것이 아니냐고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청의 황제가 건륭 49년(1784)과 가경 17년(1812) 조선에 불상[“장수불(長壽佛)"]을 선물할 때 예부가 조선에 보낸 자문에 불상이 황제의 “가상(加賞)”임을 명시하였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건륭 49년의 경우는 건륭제가 문효세자(文孝世子)를 책봉하면서 보낸 것이었고(『禮部知會遣官冊封時賜物咨』(건륭 49년 10월 13일), 『同文彙考』原編 권37, pp. 43b-44a), 가경 17년의 경우는 가경제가 효명세자(孝明世子)를 책봉하면서 보낸 것이었다(『禮部知會世子加賞賜物咨』(가경 17년 10월 일), 『同文彙考』原編續 錫賚三, pp. 1a-1b). 이들 불상 역시 조선에게는 결코 달가운 선물이 아니어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으나, 청의 칙사가 가져왔기 때문에 불상의 서울 ‘입성’을 막기란 불가능했다. 정조는 문효세자에게 보낸 불상을 북한산 승가사(僧伽寺)에 안치시켰다(『承政院日記』 정조 8년 12월 24일 조). 효명세자에게 보낸 불상의 경우는, 서울 ‘입성’을 막아야 한다는 유정양(柳鼎養)의 상소에도 불구하고 순조가 영접도감에서 일단 불상을 접수하라고 지시한 사실만 확인될 뿐이다(『朝鮮王朝實錄』 순조 12년 12월 2일 조; 『承政院日記』 순조 12년 12월 2일 조; 『承政院日記』 순조 12년 12월 4일 조).
- 53) 『禮部知會使臣謝摺知道及抄錄賞單咨』, 『同文彙考』原編 권15, pp. 15a-15b; 『禮部知會賜物及頒賞使臣咨』, 『同文彙考』原編 권15, pp. 15b-16b.
- 54) 『原奏』, 『同文彙考』原編 권15, p. 14b. 박지원의 『열하일기』에서도 황제가 주었다는 ‘금불’의 존재는 찾을 수 없다. 『열하일기』에 등장하는 불상은 진하특사 일행이 판첸으로부터 받은 ‘동불’뿐이다.

판첸이 박명원에게 준 것은 ‘동불’이지 ‘금불’은 아니지 않느냐고 물을 수 있다. 그러나 ‘금불’이라는 말은 불상의 내부 재질이 황금일 때에만 쓰는 말이 아니다. 내부 재질이 다른 것이라도 황금으로 도금했다면 ‘금불’로 부를 수도 있다. 박지원은 『열하일기』의 「피서록」(避暑錄)에서 판첸이 준 불상을 “나무를 깎아 도금”한 것으로 묘사한 바 있다.⁵⁵⁾ 나무를 깎아 만들었다는 말은 『행재잡록』 등에서 “동불”이라고 쓴 것과 모순되지만,⁵⁶⁾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불상의 “도금” 사실이다. 실제로 박지원은 『찰십륜포』에서 판첸이 준 불상을 가리켜 “소금상”(小金像)이라고 하였다.⁵⁷⁾ 여기에 더하여 ‘금불’이 실은 판첸이 준 불상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료가 또 존재한다. 10월 28일 출발한 사은행의 서장관 윤장렬이 이듬해 귀국하여 제출한 문건사건을 보면, 건륭제가 박명원 일행에게 판첸을 만나게 했던 이유(후술)를 말한 다음, “그 (판첸을) 가서 만나는 날에 이르러, (판첸이) 금불을 주었던 것은 곧 불가의 계법(戒法)의 뜻이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⁵⁸⁾ ‘금불’이란 곧 판첸이 박명원에게 준 불상이었던 것이다.⁵⁹⁾

55) 『熱河日記』 『避暑錄』, p. 276.

56) 『熱河日記』 『行在雜錄』, pp. 189-190.

57) 『熱河日記』 『札什倫布』, p. 185.

58) 『承政院日記』 정조 5년 3월 2일 조.

59) 8월 11일 판첸은 정사·부사·서장관 모두에게 불상을 주었다(『原奏』, 『同文彙考』 原編 권15, p. 14b). 따라서 문제가 된 불상의 수량은 3개여야 할 터인데, 『조선왕조실록』은 “금불 하나[金佛一軀]”로 적어 수량이 1개였던 것으로 전하고 있다(『朝鮮王朝實錄』 정조 4년 9월 17일 조). 수량 문제는 姜東局이 “황제가 보낸 금불”이 따로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한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姜東局(2012), 앞의 논문, pp. 273-275). 그러나 『朝鮮王朝實錄』 정조 4년 9월 17일 조의 해당 기사는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미 서술하였듯이 정조가 불상을 묘향산에 보내도록 한 것은 10월 23일이었다. 이 기사는 실록 편찬자가 「9.17장계」를 잘못된 날짜에 실으면서 박명원의 사행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불상의 처리 결과까지 대략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불상의 수량을 임의로 기입했을 가능성이 짙어 보인다.

‘금불’이 판첸이 준 불상이었다면, 이번에는 『초록원주자문』에서 분명 판첸이 사신에게 주었다고 한 불상을 조선 조정에서 황제가 국왕에게 보낸 불상이라고 여긴 까닭을 묻지 않을 수 없다. 『9.17 장계』에서 박명원은 불상은 물론이거니와 판첸과의 만남 자체에 대해서 일언반구조차 언급하지 않았다. 장계나 선래군관의 보고에 아무런 언급이 없는 이상, 박명원 일행과 판첸의 만남 및 문제의 불상에 관한 조선 조정의 사실 인식은 오직 8월 20일 예부가 발송한 자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예부 자문에는 박명원 일행에 대한 ‘봉불지사’ 혐의를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었다(후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조는 ‘금불’을 황제가 보낸 것이라고 생각하여 묘향산에 안치시키려는 한편, 진하특사 일행을 상대로 제기된 ‘봉불지사’ 혐의를 문제시하지 않았다. 이것은 판첸과의 만남 및 불상 수수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입수하지 않았다면 나올 수 없는 행동이다. 이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는 박명원이 올린 “별단”에서 찾을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9.17 장계』에서 박명원은 선래군관의 귀국 편에 장계를 보내면서 “별단” 1건도 함께 올린다고 하였다. 유감스럽게도 현존 사료에는 이 “별단”의 원문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11월 12일 박명원이 올린 상소를 통해서 “별단”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는지 추정할 수는 있다. 즉, 박명원은 “불동자”(佛童子)를 받아 온 일을 가리켜, “그때의 사실은 모두 이미 별단 서계(書啓)에 양달(仰達)하였으니, 지금 다시 (그) 일을 되풀이하여 (전하의 귀를) 번거롭게 더럽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신이 비록 식견이 없더라도 이단(異端)은 반드시 배척해야 함은 대략 알고 있으니, 그 어찌 사악하고 더러운 것을 받아 올 뜻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놀라고 의심하면서 쟁난(爭難)하던 때를 당하여 저들이 황명에서 나왔다고 하니 어찌 감히 황지(皇旨)를 거슬러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예부가 불자(佛子) 등 종류를 문서에 기입하여 복주(覆奏)

한 목록[『관철편여사신주접』을 지칭: 인용자]을 보기에 이르러, 비로소 그것이 과연 황지에서 나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불상 문제를 두고 청 측과 실랑이를 벌였으나 자칫 국왕에 누를 끼칠 가능성을 우려했다고 덧붙였다.⁶⁰⁾

박명원의 상소는 “황제가 보낸 금불”이란 곧 판철편이 준 불상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입증해 준다. 이 상소 내용과 8월 20일 예부가 발송한 자문의 내용을 결합해서 보면,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하다. 첫째, 박명원은 “황지”를 칭하면서 판철편을 만나라는 청 측의 요구를 어길 수 없어 판철편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불동자”를 받았다. 둘째, 박명원은 일행이 판철편을 만났고 그로부터 “불동자” 등을 받았다는 사실을 예부가 황제에게 보고하였음을 문서로 확인하였다. 이 문서는 『초록원주자문』에 첨부된 『원주』의 『관철편여사신주접』을 가리키며, 이를 본 박명원은 모든 것이 정말 “황지”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였다. 즉 “불동자”는 판철편에게서 받은 것이었지만, 박명원은 결국 황제가 준 것이라고 ‘해석’하였던 것이다. 셋째, 박명원은 “불동자”를 포함하여 판철편과의 만남과 관련된 일체의 사실을 장계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별단”에만 기록하여 국왕에게 보고하였다. 아마도 사안의 엄중성을 의식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보았듯이 『9.17 장계』는 10월 9일 서울에 도착하였다. 이때 국왕은 “별단”을 통해서 판철편과의 만남 및 “불동자”가 모두 “황지”에서 나온 것이라는 박명원의 ‘해석’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 때문에 10월 23일은 물론 10월 27일 박명원을 소견할 때에도 “황제가 보낸 금불”이라 했던 것이다. 그리고 10월 27일 박명원은 황제가 “전하를 위하여 축수하려는” 뜻에서 ‘금불’을 보낸 것이라는 자신의 ‘해석’을 되풀이하였다.

그런데 이듬해 사은행을 마치고 돌아온 윤장렬은 판철편이 준 ‘금불’에

60) 『承政院日記』 정조 4년 11월 12일 조.

“불가의 계법”이라는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박명원의 ‘해석’을 뒤집은 것이었다. ‘금불’ 수여의 주체는 황제, 그 의미는 “축수”였다는 것이 박명원의 ‘해석’이었다. 그러나 윤장렬은 수여의 주체를 판첸, 그 의미를 “계법”으로 보았다. 후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전자는 분명 ‘오해’요 ‘오판’이 된다. ‘금불’에 대한 두 사람의 상이한 이해는 판첸과의 만남 자체를 어떻게 이해했느냐에 따라 갈린 것으로 보인다.

박명원이 이끄는 진하특사의 행선지는 원래 북경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곧바로 열하로 보내지 않은 예부 관원들에게 황제가 진노하였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갑작스레 열하로 향했다.⁶¹⁾ 그리고는 “황지”에 따라 판첸을 만났다. 이 만남이 진짜 “황지”에 의한 것인지는 의심스러웠으나, 예부가 보여준 문서[『판첸금여사신주점』]를 통해서 정말 그런 “황지”가 있었음을 알았다.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되었고, 아무도 판첸을 만나게 한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았던 터라 박명원으로서 모든 것을 황제의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건릉제가 진하특사 일행을 판첸과 만나게 한 이유는 국왕을 포함한 조선 조정에게도 분명 수수께끼였을 것이다. 따라서 박명원 일행의 귀국 직후 북경으로 떠난 사은사 일행이 그 이유를 탐문한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서장관 윤장렬은 문건사건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보고하였다. “작년 가을 황제가 열하에 있을 때 번승(蕃僧)[판첸: 인용자]과 이야기하다

61) 건릉 45년 조선의 진하특사 파견은 원래 예정되어 있던 일이 아니었다. 조선에서 특사 파견을 결정한 것은 3월 20일이었지만, 청의 변경 관원들은 아마도 특사의 도강 시점[6월 24일]을 전후해서야 이를 인지하여 북경에 보고했을 것이다. 특사의 도강 시점에 이미 열하에 머물고 있던 건릉제가 조선의 특사 파견 사실을 보고받은 시점은 알 수 없다. 다만 건릉제가 조선의 특사가 북경에 도착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미리 지시하지 않았던 것은 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북경의 예부 관원들은 특사 일행의 망하례(望賀禮)만 준비하였을 뿐 도착 즉시 열하로 보내지 않았던 것이다. 『9.17 장계』에 따르면, 건릉제는 이 일의 책임을 물어 예부 관원들에게 1년의 벌봉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가 (이야기가) 외국의 일에 미쳤습니다. (그때) 황제는 조선이 예의를 두터이 숭상하고 인물과 의관(衣冠) 또한 볼 만하다고 성칭(盛稱)하였습니다. 그런데 진하 사행이 마침 그때에 연경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신으로 하여금 나아가 (판첸을) 만나게 한 것은 대개 번승에게 과시(誇示)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⁶²⁾ 그리고 윤장렬의 이러한 해석은 그의 독단이 아니었다. 건륭 46년 3월 2일 정조는 윤장렬을 소견한 자리에서 이렇게 물었다. “황제가 작년에 사신을 불러 판첸을 만나게 한 것은 우리나라의 문물을 (판첸에게) 과장(誇張)하려는 것이었다고 하였는데, (정말) 그러한가?” 윤장렬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저 사람들[彼人]의 전하는 바가 이와 같습니다.”⁶³⁾

윤장렬은 건륭 45년 8월의 상황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건륭제가 진하특사 일행을 판첸과 만나게 했던 것이 기본적으로 ‘우연’의 산물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판첸의 불상 선물이 황제와 무관한 “계법”의 의미였음도 파악할 수 있었다. 현재 시점에서 보기에 윤장렬의 보고가 진실에 근접한 것으로 판단된다.⁶⁴⁾ 그러나 건륭 45년 8월 박명원 일행은 아무런 영문도 모르는 채 그들로서는 황당하고 당혹스럽기 그지없는 상황에 직면해야 했다. 그러한 까닭에 ‘오해’와 ‘오판’의 함정에 빠졌고, 급기야 ‘봉불지사’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기에 이

62) 『承政院日記』 정조 5년 3월 2일 조.

63) 『日省錄』 정조 5년 3월 2일 조.

64) 이 문제와 관련하여, 건륭제가 조선에 대하여 티베트 불교와의 “연결 가능성을 타진”하였고, 판첸에 대해서는 당시까지 “티베트와 무관했던 제국의 또 다른 영역”을 소개하고자 했을 것이라고 추정한 연구가 있다(차혜원(2010), 앞의 논문, 343-344쪽). 그러나 이는 윤장렬의 보고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윤장렬의 보고를 고려할 때 후자는 몰라도 전자는 근거가 박약해 보인다. 게다가 건륭제가 정말 조선에 대하여 티베트 불교와의 “연결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했다면 9월 1일 판첸의 북경 도착(石濱由美子(1994), 앞의 논문, p. 36) 이후에도 박명원 일행의 판첸 접견을 재차 시도하지 않았을까?

르렸다.

지금까지의 고찰을 염두에 두고 이런 상상을 해 보자. 만약 박지원이 『열하일기』를 쓰지 않았다면 건륭 45년 박명원의 사행은 과연 어떤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 박명원은 『9.17 장계』에서 황제의 특별한 우대 조치를 낱낱이 열거하고 있다. 박명원은 판첸이 준 불상을 황제가 준 것이라고 ‘오판’하여 ‘배불의 나라’ 조선에 ‘모시고’ 왔다. 그래서 ‘봉불지사’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판첸을 만나고 불상을 받은 경위를 해명한 “별단”을 국왕에게 제출했지만, 민감한 내용 탓인지 몰라도 그 “별단”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다. 게다가 『동문회고』에 수록된 예부의 자문에는 ‘봉불지사’의 혐의를 확인해 주는 내용까지 있다(뒤에서 상술). 결국 박명원은 건륭제의 우대에 도취한 ‘봉불지사’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조선의 관료 사대부에게 ‘봉불지사’는 최악의 오명이었을 터이니, 정면으로 반박은 못할지언정 부득이했던 사정도 밝히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박명원과 정원시는 11월 12일의 상소에서 부득이하게 불상을 받아온 경위를 밝혔으나, 상소의 내용은 다른 기록에서 확인되는 ‘봉불지사’ 혐의를 벗기에 부족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박명원에게는 박지원이 있었다. 박명원이 『열하일기』를 읽었다면, 아마도 박지원을 자제군관으로 삼아 사행에 데려갔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런 열하행을 그에게 강력히 권유했던 일을 되돌아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이다.⁶⁵⁾ 박지원이 『열하일기』에서 판첸과의 만남 및 불상에 관한 일을 자세하고 치밀하게 해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지원으로서도 종형(從兄) 박명원에 대한 ‘봉불지사’ 혐의는 그냥 방치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비록 자제군관의 신분이었지만 그 자신도 필경은 진하특사 일행에 속하였으므로 ‘봉불지사’라는 오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

65) 진하특사 일행의 열하행이 결정되었을 때 박명원은 주저하는 박지원에게 동행을 강력히 권유했다(『熱河日記』 『漢北行程錄』, p. 114).

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제 박지원이 『열하일기』에서 어떻게 ‘봉불지사’를 위한 변호론을 전개하였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5. 『열하일기』의 ‘봉불지사’ 변호론

5.1. 청 예부의 문서 변조 고발

『열하일기』의 「행재잡록」에는 조선 사신의 열하 여행 및 활동과 관련해서 청 예부의 관원들이 작성한 문서 10건이 실려 있다.⁶⁶⁾ 이 가운데 예부가 조선 사신의 판첸 접견 사실을 황제에게 보고한 문서와, 역시 예부가 황제의 “가상”에 감사하는 박명원의 정문을 황제에게 보고한 문서에는 ‘봉불지사’ 문제와 관련하여 민감한 내용이 보인다. 전자는 <표 2>의 「초록원주자문」에 첨부된 「원주」의 상주 3건 중 「판첸급여사신주

66) 『熱河日記』 「行在雜錄」, pp. 188-191. 이들 문서 10건의 개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8월 4일 저녁 예부가 회동사역관 대사(大使) 장문금(張文錦)에게 조선 사신을 열하로 데려오라는 황제의 유지를 전하는 문서; ② 8월 4일 예부가 장문금에게 열하로 갈 조선 사신 일행의 명단을 서둘러 제출하라고 지시하는 문서; ③ 열하로 갈 조선 사신 일행의 명단[아마도 8월 4일 장문금이 예부에 제출]; ④ 8월 9일 예부의 만·한 상서가 조선 사신의 열하 도착 사실을 황제에게 보고하는 문서; ⑤ 8월 10일 예부의 만·한 상서가 조선 사신이 2품·3품 대신의 반열에 들어가 행례하라는 황제의 명령에 감사하는 정문을 올렸다고 황제에게 보고하는 문서; ⑥ 8월 12일 예부가 8월 11일에 조선 사신이 판첸을 만난 사실과 판첸으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황제에게 보고하는 문서; ⑦ 예부가 조선에 보낼 문서를 병부로 송달하는 문서; ⑧ 예부가 만수절 당일의 조하 의례 절차를 황제에게 보고하는 문서; ⑨ 예부의 주객청리사가 황제가 앞으로 조선에서 사은 표문을 올릴 때에는 방물을 준비하지 않도록 하라는 유지를 8월 12일 내각에 하달했다는 내용의 자문을 행재 예부로부터 받았음을 예부 당상관에게 보고하는 문서; ⑩ 8월 14일 예부의 만·한 상서가 조선 사신이 국왕 및 사신 일행에 대한 황제의 “가상”에 감사하는 정문을 올렸다고 황제에게 보고하는 문서.

접』에, 후자는 「사신사접자문」에 각각 해당한다. 제2장의 말미에서 「초록원주자문」과 「사신사접자문」이 예부의 상례를 벗어난 발송이라는 문제 외에 진하특사의 활동과 관련하여 매우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제 그 까닭을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겠다.

서술의 편의상 먼저 「사신사접자문」을 보자. 「9.17 장계」에 따르면, 열하에서 예부는 박명원에게 8월 9일과 8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 사은 정문의 제출을 요구하였다[<표 3> 참조]. 박명원은 두 차례 모두 “사사”(私謝)의 불가를 주장하였는데, 특히 8월 13일의 경우는 국왕에 대한 “별예단”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사”는 더욱 불가하다고 하면서 예부와 실랑이를 벌였다. 그러나 예부의 고집을 이길 수 없어서 결국 “별상(別賞)을 삼가 받았다는 뜻”만 적어 정문으로 제출하였다. 『열하일기』의 「행재잡록」에 따르면, “황은”에 감사한다면서 예부에 제출한 정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았다.

(가) 伏以恭遇皇上萬壽節屆，九域慶溢，本國不勝歡忭之祝，略效進賀之忱。[禮部添，‘瞻望聖僧，獲沾福佑。’] 乃者格外恩賞，特沾小邦，至及於陪臣之賤。[禮部改，‘加賞國王陪臣并從人等緞匹銀兩。’] 榮光所被，曠絕前後。謹當歸奏國王，[禮部添，‘另行具表陳謝。’] 感戴皇恩，呈請禮部大人，代爲轉奏(‘[]’ 부분은 박지원의 주석; 밑줄은 인용자).⁶⁷⁾

그런데 『동문회고』에 수록된 「사신사접자문」을 보면, 박명원의 정문은 다음과 같았다.

(나) 伏以國王恭遇皇上七旬萬壽大慶，不勝歡忭，使朴明源等，賚表虔賀。當蒙特恩，令陪臣等，附於天朝二三品大臣之末，隨班行禮。已屬榮幸，又奉恩旨，令陪臣等，拜見班禪額爾德呢，瞻仰聖僧，得沾福祐。

67) 『熱河日記』 「行在雜錄」, p. 191.

復蒙隆恩，得以隨附天朝大臣之班聽戲。皆小國陪臣等，素所未逢未見之曠典。茲蒙皇上格外天恩，加賞國王並陪臣等緞匹，以及從人等銀兩。陪臣跪頌之下，感戴難名。謹當回邦啓知國王，另行具表，敬謹叩謝天恩外，所有朴明源等感激悃忱，伏乞代爲轉奏(밀줄은 인용자).⁶⁸⁾

(가)의 정문 내용은 「9.17 장계」의 보고와 부합하는 것으로, “격외은상”(格外恩賞)이 미천한 배신(陪臣)인 자신에게까지 미쳤음을 감사하며 국왕에게 사실을 보고하겠다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분량도 (가)에 비해 훨씬 많을뿐더러 몇몇 군데 중요한 수정 및 첨가가 있다. 박지원에 따르면, 예부 필첩식(筆帖式) [‘서기’라는 뜻의 만주어 ‘bithesi’의 음역]의 문부(文簿)를 통해 상주 내용이 원본과 크게 달라졌음을 발견하고 크게 놀란 박명원은 역관을 보내어 예부에 항의했으나, 원본에 “사실” 언급이 전혀 없어 조선을 위해 “주선”(周旋)해 준 것인데 고마운 줄 모르고 도리어 화를 내는 편잔만 들었다고 한다.⁶⁹⁾ (가)의 정문 원본이 추상적 서술임에 비해 (나)의 서술이 “황은”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예부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박명원의 입장에서 예부의 무단 “첨개”(添改)에는 두 가지의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 박지원이 (가)에서 예부가 무엇을 더하고 고쳤는지 밝힌 것도 두 가지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첫째, “(은상이) 특별히 소방(小邦)을 적시고 미천한 배신(陪臣)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特沾小邦，至及於陪臣之賤]를 “국왕과 배신 등에게 단필(緞匹)을, 그리고 종인 등에게 은량(銀兩)을 추가로 상사(賞賜)하셨습니다” [加賞國王並陪臣等緞匹，以及從人等銀兩]로 고치고, “삼가 마땅히 둘

68) 『禮部知會使臣謝摺知道及抄錄賞單咨』, 『同文集考』 原編 권15, pp. 15a-15b.

69) 『熱河日記』 『行在雜錄』, p. 191. 서장관 조정진은 박명원의 정문을 예부가 “임의로 개찬(任自改撰)”하였음을 언급하면서, 근래 감정 기복이 심한[喜怒暴發] 황제에 대하여 신하들이 “영합(迎合)과 미봉(彌縫)”을 일삼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고하고 있다(『承政院日記』 정조 4년 11월 5일 조).

아가 국왕에게 아뢰겠습니다”[謹當歸奏國王]에 몇 구절을 첨가하여 “삼가 마땅히 나라로 돌아가 국왕에게 아뢰어 알려(국왕이) 따로 표문을 갖추어 천자의 은혜에 공경하고 삼가며 고사(叩謝)하도록 하겠습니다”[謹當回邦啓知國王, 另行具表, 敬謹叩謝天恩]로 수정한 것은 조선 조정에 외교적 부담을 줄 수 있었다. 본래 박명원은 “격외은상”이 미천한 “배신”, 즉 자신에게까지 미쳤다고 말하고, 귀국 후 이 사실을 국왕에게 보고하겠다고만 하였다. 그러나 (나)에서 예부는 “가상”의 대상에 “국왕”을 추가하고 국왕이 별도로 표문을 갖추어 사은할 것이라는 구절을 덧붙였다. 조선 조정이 9월 20일경 사은사 파견을 결정하였던 것도 이 같은 수정의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예부가 추가한 “성승(聖僧)을 침앙(瞻仰)하여 복우(福祐)를 더할 수 있었다”[瞻望聖僧, 得沾福祐]는 귀국 후 박명원 일행에게 가해진 ‘봉불지사’ 혐의를 강화시킬 수 있었다. (나)에 보이는 판첸 “배견”(拜見)은 『9.17 장계』에서 판첸과의 만남을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박명원의 입장에서 그 자체로 끔찍러운 일이었다. 하물며 예부가 “성승을 침앙하여 복우를 더할 수 있었다.”고 쓴 것은 글자 하나하나가 정말 심각한 문제였다. 이것이 만약 박명원의 붓에서 나온 것이라면, 박명원은 꼼짝없이 ‘봉불지사’의 혐의를 벗어날 수 없다. 박지원이 이 구절을 두고 예부가 멋대로 첨가한 것임을 특기(特記)한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었을 것이다.

5.2. 「찰십륜포」(札什倫布)의 내용 및 구성과 ‘봉불지사’ 변호론

이번에는 예부가 조선 사신의 판첸 접견 사실을 황제에게 보고한 「판첸금여사신주접」을 보자. 8월 13일 작성한 정문의 문제는 예부가 원문을 멋대로 고친 탓으로 돌림으로써 일단 해명이 되었다고 하자. 또 “성승을 침앙하여 복우를 더할 수 있었다.” 운운한 것은 8월 11일 판첸과의 만남

을 회고한 것으로 만남 당일 사신 일행의 행동거지를 직접 묘사한 것은 아니다. 이에 반해서 판첸 접견 사실 자체를 다룬 「판첸급여사신주첩」은 박명원 일행이 판첸과 만날 때 수행한 구체적인 ‘의례’에 관계된 것이다. 「행재잡록」 수록 문서를 『동문회고』의 「판첸급여사신주첩」과 대조해 보면 사소한 차이가 있을 뿐 내용이 완전 일치한다.⁷⁰⁾ 따라서 이 문서의 경우는 두 기록을 대조할 필요가 없다. 『동문회고』 수록 원문에서 주요 부분을 뽑아 보면 다음과 같다.

(다) 臣等遵旨派員，會同理藩院司員等，帶領朝鮮國正使朴命源·副使鄭元始·書狀官趙鼎鎮等，前詣札什倫布，**拜見**班禪額爾德呢。行禮後，令坐吃茶。詢問該國遠近，並入貢緣由。該使臣答以因皇上七旬大慶，進表稱賀，並恭謝天恩。班禪額爾德呢聞之甚喜，即囑令永遠恭順，自然獲福。因給與銅佛藏香檴魯等物，該使臣等當即**叩謝**(밀줄은 인용자; ‘拜見’의 ‘拜’는 원문에 ‘邦’이나 오자가 분명하므로 수정).⁷¹⁾

(다)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밀줄 친 “배견”(拜見)과 “고사”(叩謝)이다. 「행재잡록」에서 박지원은 이 문서를 옮겨 적은 다음, “예부의 주문(奏聞)을 보면, 그것이 ‘액이덕니(額爾德尼)[판첸: 인용자]를 배견(拜見)하였다’느니 ‘사신 등에게 물건을 주자, 해당 사신 등이 곧바로 고사(叩謝)하였다’느니 말한 것은 모두 거짓말[妄]이다.”라고 지적하면서도, “그러나 주어(奏語)의 사세(事勢)가 어쩔 수 없었을 따름이다.”라고 하여 예부의 “배견”·“고사” 운운을 그들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었던 것으로 양해

70) 이체자 사용으로 인한 글자의 차이가 보인다. 그 밖에 「행재잡록」의 ‘액이덕니(額爾德呢)’를 『동문회고』에서는 “반선액이덕니(班禪額爾德呢)”[‘판첸 어르터니’: 판첸의 정식 봉호(封號)로 적었다. 다만 「행재잡록」에서는 박명원 일행이 판첸을 만나러 간 날을 8월 12일[“本月十二日”]로 적었으나 이는 11일의 오기가 분명하다(후술). 『동문회고』에는 이 날짜가 없다. 예부가 황제에게 상주한 날짜는 『동문회고』와 「행재잡록」 모두 “8월 12일”로 일치한다.

71) 「原奏」, 『同文彙考』原編 권15, p. 14b.

하였다.⁷²⁾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한 해명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독자는 ‘그렇다면 어떻게 했다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지기 마련이다. 예부의 “배건”·“고사” 운운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판첸과의 만남에서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적극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박지원은 “사신이 판첸을 만난 일은 내가 『찰십륜포』 기(記)에 갖추어 실었다.”고 밝히고, “내가 목격한 바[吾所目擊者]에 의거하여 자세히 기록하였으니,” “독자는 마땅히 그 (사실을) 살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였다.⁷³⁾ 그렇다면 박지원이 자신이 “목격한 바”를 적은 『찰십륜포』를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다.

『찰십륜포』를 보기에 앞서 『태학유관록』의 일기를 통해 판첸 접견 날짜를 재확인해 두자. 『태학유관록』에 따르면, 8월 11일 박지원은 숙소에 있다가 황제가 삼사를 인견한 후 판첸을 만나러 가라고 명하였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에 박지원은 삼사 일행을 쫓아 찰십륜포[수미복수지묘(須彌福壽之廟)]로 달려갔다. 박명원이 문 밖에서 대기하라고 했던 하인들마저 경내에 들어오게 된 경위까지 묘사한 박지원은, 이때의 일을 따로 기록한 『찰십륜포』와 『반선시말』이 있음을 언급한 다음, 황제 알현에서 판첸 접견까지의 과정에 대하여 박명원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적고 있다. 8월 11일 일기의 말미에는 숙소에 돌아온 뒤 판첸과의 만남을 부러워하는 “중원의 사대부”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당시의 이야기를 『황교문답』에 실었음을 밝히고 있다.⁷⁴⁾

이처럼 조선 사신 일행이 판첸을 만난 날짜는 8월 11일이었다.⁷⁵⁾ 또한

72) 『熱河日記』 『行在雜錄』, p. 189.

73) 『熱河日記』 『行在雜錄』, p. 189.

74) 『熱河日記』 『太學留館錄』, pp. 136~139.

75) 위에서 인용한 (다)의 내용을 담은 『동문회고』 기록에는 판첸을 만난 날짜가 생략되어 있다. 청과 조선의 기타 사료에서도 이 만남의 날짜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티베트 측 사료를 통해서 그것이 8월 11일의 일이었음을 확정할 수 있다(丹珠昂

박지원은 8월 11일의 일기에서 「찰십륜포」·「반선시말」·「황교문답」 등 3편으로 독자의 시선을 인도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찰십륜포」는 청·티베트 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즐겨 인용하는 사료이기도 하다.⁷⁶⁾ 후술하듯이 건륭제와 판첸의 만남까지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박지원이 자신이 “목격한 바”를 적었다는 「찰십륜포」의 내용을 살펴보자.⁷⁷⁾ 「찰십륜포」의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부분은 박명원 일행이 판첸과 만날 때의 ‘의례’에 관한 것이다[이하 ‘만남의 의례’]. 그 주요 내용은 이렇다. 박지원은 먼저 전내(殿內)에 판첸이 가부좌를 한 채 남향하고 있고 라마의 복장을 한 청의 “군기대신”⁷⁸⁾ 등이 판첸을 모시고 있었음을 묘사한다. 황제가 판첸을 만날 때 쓰라고 내무부(內務府) 관원을 통해 “합달”(哈達[hada/khata: 티베트 불교에서 쓰는

奔 主編, 『歷輩達賴喇嘛與班禪額爾德尼年譜』, 北京: 中央民族大學出版社, 1998, p. 555). 嘉木央·久麥旺波, 許得存·卓永強 譯, 『六世班禪洛桑巴丹益喜傳』, 拉薩: 西藏人民出版社, 1990의 제14장 鐵鼠年 8월 11일 조에는 이 만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보인다(텍스트 파일을 참조한 탓에 페이지는 적지 못함).

76) 예컨대 石濱由美子(1994), 앞의 논문; 村上信明(2006), 앞의 논문; 柳森(2012), 앞의 논문; 張亞輝(2013), 앞의 논문 등 해외의 많은 연구자가 『열하일기』의 「찰십륜포」를 인용하고 있다.

77) 『熱河日記』 「札什倫布」, pp. 184-186. 이하 「찰십륜포」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석을 달지 않는다.

78) 박지원은 “군기대신”이라고 썼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六世班禪洛桑巴丹益喜傳』에 따르면 판첸이 박명원 일행을 만날 때 배석한 청의 대신은 “박대신(博大臣)과 류보주대신(留保柱大臣)”이었는데(『六世班禪洛桑巴丹益喜傳』 제14장 鐵鼠年 8월 11일 조), 이 두 사람은 건륭 45년의 군기대신 아계(阿桂), 복룡안(福隆安), 양국치(梁國治), 화신(和珅), 동고(董誥), 복장안(福長安) 등 6명 가운데 누구와도 일치하지 않는다(錢實甫 編, 『清代職官年表』, p. 142). 류보주(留保柱)는 건륭 40년 10월부터 건륭 44년 정월까지의 주장대신(駐藏大臣)으로(『清代職官年表』, pp. 2303-2307), 티베트로부터 판첸을 수행해 온 인물이고, “박대신”은 당시 이변원상서(理藩院尙書)였던 박청액(博淸額)을 가리킨다(『清代職官年表』, p. 240). 이 밖에도 『열하일기』에는 “군기대신”이 몇 차례 등장하는데,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의례용 스카프)을 주었음을 언급하고, “군기대신”이 황제·황자·부마 조차 모두 판첸에게 “고두”(叩頭)하니 조선 사신도 마땅히 “배고”(拜叩)해야 한다고 말했음을 서술한다. 또 이미 아침에도 박명원 등이 황제마저 판첸을 “사례”(師禮)로 대우하니 “황조”(皇詔)를 받든 조선 사신 역시 그를 똑같이 예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예부상서 덕보(德保)와 실랑이를 벌였음을 밝힌다. 이어서 박명원이 판첸과 처음 대면하는 순간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박명원은 앉아 있는 판첸과 “합달”을 교환할 때에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양수”(仰首)], 청의 “군기” 등이 눈치를 주는 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내 문제의 “배고”를 하지 않았다. 박명원과 대조적으로 청의 통관 등은 모두 “고두”하였다. 판첸과 사신 간에는 “중오역”(重五譯)의 통역을 통한 짧은 대화가 있었고,⁷⁹⁾ 판첸 측은 작은 불상[“小金像”] 등을 선물로 나누어주었다.

두 번째 부분에서 박지원은 판첸을 만나고 수미복수지묘를 빠져나온 일행이 모여 앉아 밥을 먹으면서 불상의 처치 문제를 두고 고민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이하 ‘불상의 처치’]. 진하특사 일행에게 창졸간에 받은 불상은 “물리치자니 불공(不恭)하게 되고, 받자니 명분이 없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황제의 조지(詔旨)”에 관계된 것인 데다가 상황은 너무도 급박하게 돌아갔고, 사신은 그저 “토소목우”(土塑木偶)처럼 저들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고 물러나며 앉고 서고”[進退坐立] 했을 따름이다. 게다가 “중역”(重譯)으로 인해 의사 전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79) 여기서 “중오역(重五譯)”을 “다섯 차례의 통역 과정”(차혜원(2010): 344)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판첸의 말이 박명원에게 전달되기까지 “다섯 차례의 통역 과정”이 있었다면 전체 여섯 가지 언어가 필요하다. 그런데 당시 통역 과정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언어는 최대 다섯 가지[티베트어, 몽골어, 만주어, 한어, 조선어]에 그친다. 따라서 “중오역”이란 단지 많은 단계의 통역을 거쳤음을 나타내기 위한 수사적 표현이었거나, 해당 원문[“喇嘛受語傳蒙古王, 蒙古王傳軍機, 軍機傳烏林哺以傳我譯, 蓋重五譯也”]에 등장하는 다섯 사람[喇嘛, 蒙古王, 軍機, 烏林哺, 我譯]이 판첸과 박명원 사이에 끼어 있었음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런 까닭에 불상을 영접결에 받고 맡았다. 박명원은 숙소인 태학에 불상을 들일 수는 없다면서 역관에게 불상 둘 곳을 찾아보게 하였다.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가운데, 박지원은 사신 일행을 구경하던 무리 속에서 군기장경 소림[8월 9일 황제의 유지를 전한 사람: <표 3> 참조]과 환관 2명을 발견하고는 그들이 자신들의 의논을 엿들었는지 모른다는 우려를 표시한다. 결국 사신 일행은 불상 둘 곳을 찾지도 못하여 숙소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다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어야만 했다.

이어서 바로 세 번째 부분이 이어진다[이하 ‘건릉과 판첸의 만남’]. “황제가 원중(苑中)에서 매화포(梅花炮)를 놓고는 사신을 불러 (궁에) 들어와서 보게 하였다.”고 말한 다음, 박지원은 전각의 가운데 뜰에 “황악”(黃嶽)이 세워져 있었다고 적는다. 수많은 관원이 각자의 자리에 서 있고, 판첸이 먼저 와서 탐상(榻上)에 기다리고 있었다. “일품보국공”(一品輔國公) 등이 탐하(榻下)로 가서 판첸에게 모자를 벗고 “고두”하였다. 황제가 등장하자 판첸은 천천히 일어나 웃으면서 황제를 맞았다. 황제는 두 손으로 판첸의 손을 쥐고는 서로 흔들면서 웃으며 이야기했다. 둘은 같은 탐상에 보료만 따로하여 무릎이 닿을 정도로 가까이 앉았다. 청의 조정을 뒤흔들던 권신 화신(和珅)과 복장안(福長安)이 각각 건릉제와 판첸의 차 시중을 들었다. 날이 저물자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마주잡고 있다가 헤어졌다.

이상이 박지원 자신이 “목격한 바”를 근거로 썼다는 『찰십료포』의 주요 내용이다. 첫 번째 ‘만남의 의례’에서 박지원은 8월 11일 박명원이 판첸에게 “배고”한 사실이 없음을 밝혔다. (다)에서 예부가 “배견”·“고사” 운운한 것이 사실과 다름을 적극적으로 해명한 것이다. 게다가 박명원의 “배고” 거부는 예부상서나 “군기대신” 등의 강요를 이겨낸 ‘쾌거’였다.

두 번째 ‘불상의 처치’는 문제의 불상을 두고 사신 일행이 얼마나 고민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행간의 의미는, 만약 사신 일행에게 만남의 과

정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면, 또는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면, 또는 언어 장벽이 낮기라도 했다면 불상의 수령도 거부하였으리라는 것이다. 게다가 불상을 태화에 들이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잘 알고 있어서 나름 방도를 모색했으나, 감시의 눈길이 있어 그마저 여의치 않았다. 그리고 이 모든 사태는 “황제의 조지(詔旨)”에 의한 것이었다.

‘불상의 처치’는 11월 12일 박명원의 상소 내용과도 부합한다. 하지만 박지원의 해명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피서록』에서 박지원은 불상 둘 곳을 찾지 못한 뒤의 이야기를 잇고 있다. 오늘 판첸에게서 받은 불상은 거의 1척 크기로 목재를 깎아 도금한 것으로 보이는데, 창졸간에 이를 받고는 일행 상하가 어쩔 줄 몰라 했다. 저녁에 박명원에게 대책을 물으니 수역(首譯)을 시켜 작은 궤짝을 마련하라 시켰다고 한다. 박지원이 좋은 생각이라 하자, 박명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물었다. 박지원이 강물에 띄우려는 것 아니냐고 대꾸하자, 박명원이 웃었고 박지원 역시 웃었다. 박지원은 “연도(沿道)의 사찰에 버려 두자니 중국이 분노할까 두렵고, 이걸 들고 입국하자니 물의를 일으킬 것이 뻔하니, 피차의 교계에서 물에 띄워 흘러보내 바다로 보내기는 압록강만한 데가 없다.”고 적었다.⁸⁰⁾ 이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 박명원이 정조의 명령에 따라 불상을 묘향산으로 보낸 것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이다.

문제의 불상에 관한 뒷이야기는 『행재잡록』에도 등장한다. (다)의 “배견”·“고사”가 “거짓말”이었음을 언급한 다음, 박지원은 삼사가 받은 물건의 목록을 적었다. 이어서 불상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한다. 동불은 호신불의 의미로 멀리서 온 자에게 선물하는 것이 중국의 예이며, 티베트에서도 연례 진공(進貢) 때 불상을 가장 중요한 방물로 바친다는 것이다. 이 동불은 판첸이 조선 사신을 위해 “기축”(祈祝)하는 의미로 준 상급의 예물[“上幣”]이지만, 조선에서는 “한 가지 일이라도 불교와 관계되면 반

80) 『熱河日記』 『避暑錄』, p. 276.

드시 평생의 누(累)가 되는데, 하물며 이것을 준 자가 번승(番僧)임에랴?” 라고 하면서, 사신이 북경으로 돌아온 뒤 판첸이 준 (불상을 제외한 나머지) “폐물”(幣物)을 죄다 역관들에게 주었음을 밝혔다.⁸¹⁾ 역관들도 이를 분노처럼 더럽게 여겼고, 은 90냥을 받고 팔아 일행의 마두배(馬頭鬘)에게 나누어 주었으나 그들도 더럽다 여겨 그 은으로는 술 한 잔도 사서 마시지 않았다고 한다. 비록 “깨끗하다면 깨끗할 것이나, 남의 풍속으로 보자면 촌놈의 어리석음(이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여 불상을 준 자의 뜻을 헤아리려 들지 않는 태도에 일침을 가하긴 하였지만, 이를 통해서 박지원은 사신 일행이 위아래 가릴 것 없이 판첸의 선물에 관한 한 모두가 한결같은 심정이었음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⁸²⁾

여기서 눈길을 끄는 것은 불상을 선물한 판첸의 의도에 대한 박지원의 ‘해석’이다. 박명원은 이 불상이 실은 국왕의 장수를 기원하고자 황제가 준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그러나 윤장렬은 판첸의 불상 선물을 “불가의 계법”으로 보았고, 이는 불상이 황제와 무관하다는 의미였다. 아마도 『행재잡록』을 쓸 무렵 박지원 역시 황제가 불상과는 무관했음을 깨달은 것 같다. 이제 박지원은 판첸의 불상을 멀리서 온 조선 사신을 “기축”하는 상급의 예물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박지원은 불상에 관한 해명에 지면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봉불지사’를 위한 변호라는 측면에서 그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대목은 『찰십륜포』의 ‘건륭과 판첸의 만남’이 아닐까 싶다. 박지원은 매화포, 즉 불꽃놀이를 할 때 황제가 판첸을 만나는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였다. 여기서 황제와 판첸은 의례상 대등한 존재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열하일기』가 청·티베트 관계의 성격을 둘러싼 논쟁에서 종종 인용되는 것도 순전히 이 장면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륭과 판첸 간 만남

81) 姜東局은 이때 판첸이 준 불상까지 처분한 것으로 오해하였다(姜東局(2012), 앞의 논문, 255쪽, 261쪽).

82) 『熱河日記』 『行在雜錄』, pp. 189-190.

의 의례와 관련하여 한문 사료와 장문(藏文) 사료 간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열하일기』의 묘사는 제삼자의 객관적 관찰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이 그가 예상한 효과는 아니었을 것이다. 박지원이 『찰십륜포』 마지막 부분에 이 장면을 배치한 이유는 ‘만남의 의례’ 부분과 연결해서 보아야 한다. 청의 관원들은 박명원에게 판첸에 대한 “배고”(拜叩)와 “사례”(師禮)를 강요하였다. 박지원은 심지어 황제도 판첸에게 “고두”한다는 그들의 주장을 소개하였다. 그러나 의심 많은 독자라면 ‘황제가 설마?’라는 의문을 던질 수 있다. 박지원은 자신이 “목도한 바”에 근거하여 황제와 판첸의 항례(抗禮) 장면을 묘사함으로써 이런 독자를 향해 회심의 결정타를 날렸던 셈이다. 게다가 박지원은 권세에서 화신과 쌍벽을 이루는 복장안이 판첸의 차 시중을 든 사실도 밝혔다. 혹시나 시선의 분산으로 효과가 반감될까 우려했는지, 박지원은 불꽃놀이 자체는 이 부분에서 언급하지 않고, 따로 『매화포기』(梅花炮記)를 써서 『산장잡록』(山莊雜記) 속에 배치하기까지 하였다.⁸³⁾ 이 정도면 박지원을 포함한 박명원 일행에게 어느 누구도 막무가내로 ‘봉불지사’ 혐의를 씌우기 힘들어 보인다. 판첸은 곧 황제와 동격인 존재였기 때문이다.⁸⁴⁾

하지만 박지원의 강조한 대로 그것이 “8월 11일”에 자신이 “목도한 바”에 근거한 것인지는 한 번 따져볼 문제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찰십륜포』의 ‘건륭과 판첸의 만남’은 사실 “8월 11일”에 일어난 일이 아니며, 그가 직접 “목도한 바”가 아니라 (아마도 삼사로부터) “전해 들은 바”에 근거한 묘사였다. 박지원은 8월 11일 자신이 “목도한 바”를 기록한 ‘만남의 의례’와 ‘불상의 처치’ 다음에, 8월 14일에 있었던 ‘건륭과 판첸

83) 『熱河日記』 『山莊雜記』, pp. 247-248.

84) 불꽃놀이를 하던 날 건륭과 판첸이 만났고 두 사람이 항례하였다는 『찰십륜포』의 묘사는 티베트 측 사료의 내용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그 날짜는 8월 14일이었다 (『六世班禪洛桑巴丹益喜傳』 제14장 鐵鼠年 8월 14일 조).

의 만남’에 대해 “전해 들은 바”를 접속시킴으로써 ‘봉불지사’를 위한 변호의 효과를 극대화하려 했던 것이다.

『태학유관록』의 8월 11일 일기와 『찰십륜포』의 서술을 따라가다 보면, 『찰십륜포』의 세 부분은 모두 같은 날, 즉 8월 11일에 있었던 일을 묘사한 것처럼 읽힌다. 실제로 몇 년 전 일본의 한 논문은 『열하일기』를 언급하면서, “조선 사절은 수미복수묘를 나온 뒤, 피서산장 안에서의 연석(宴席)에 초대되어, 거기서 건륭제와 판첸 라마 3세가 만나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다”고 쓰고 있다.⁸⁵⁾ 그런데 이 글의 <표 3>에서 보았듯이, 조선 사신의 열하 체류 기간에 불꽃놀이가 열린 날은 8월 11일이 아니라 14일이었다.⁸⁶⁾

청의 기거주에 따르면, 8월 11일 건륭제는 토르구트의 칸을 비롯한 일행 7인과 조선의 삼사를 피서산장 궁문에서 인견한 외에 다른 일정을 소화하지 않았다.⁸⁷⁾ 판첸 역시 하루 종일 수미복수지묘에 머무르면서 조선 사신 등을 접견하였다.⁸⁸⁾ 8월 11일에는 불꽃놀이도 없었고 ‘건륭과 판첸의 만남’도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열하일기』를 제외한 모든 사료는 불꽃놀이를 8월 14일의 일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청의 기거주는 8월 14일 오후 만수원에서 불꽃놀이가 있었음을 전하고 있고, 당시 참석자 명단에 박명원 등 3인을 포함시키고 있다.⁸⁹⁾ 티베트 측 사료에서도 불꽃놀이 날

85) 村上信明(2006), 앞의 논문, p. 131.

86) 金東錫은 『열하일기』의 기록에 따라 불꽃놀이의 날짜를 8월 11일로 확정하고, 『조선왕조실록』에 실린 「9.17 장계」가 불꽃놀이를 14일의 일로 보고한 것을 두고, “당시의 기록물이 제도적, 사회적, 이데올로기적 사고에 의하여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개인 저작물인 『열하일기』는 비교적 이런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金東錫2005), 앞의 논문, 204쪽). 그러나 불꽃놀이는 8월 14일의 일이었다.

87) 「乾隆四十五年巡幸熱河起居注」, 『清宮熱河檔案』 4, p. 490.

88) 『六世班禪洛桑巴丹益喜傳』 제14장 鐵鼠年 8월 11일 조.

89) 「乾隆四十五年巡幸熱河起居注」, 『清宮熱河檔案』 4, p. 491.

짜는 8월 14일이다.⁹⁰⁾ <표 3>에서 보았듯이 박명원의 「9.17 장계」도 마찬가지로이다.

따라서 「찰십륜포」는 독자에게 일종의 ‘시간 착오’를 일으키게끔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찰십륜포」에서 박지원이 8월 11일 오전에 벌어진 일에 8월 14일 오후의 일을 곧바로 접속시킨 것은 단순한 ‘실수’였을까? 즉, ‘불상의 처치’에서 ‘건륭과 판첸의 만남’으로 넘어올 때 날짜 기입을 ‘실수’로 잊은 것은 아닐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태학유관록」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

8월 11일의 일기는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으므로 8월 12일 이후를 보자. 8월 12일 삼사는 새벽 무렵에 입궐했고, 박지원은 아침을 먹은 뒤 궁궐에 갔다. 박지원은 안쪽에 설치된 희대 위에서 펼쳐지는 공연을 담장 밖에서 구경했다. 8월 13일 삼사는 만수절 조하(朝賀)에 참석하고자 새벽에 입궐했고, 박지원은 뒤늦게 일어나 궁궐 가까이에서 화신이 진상했다는 물건을 보았다. 저녁에 여지즙을 맛보았고, 밤에는 기풍액(奇豐額)과 이야기를 나누었다.⁹¹⁾

이처럼 12일·13일 양일에 박지원은 삼사와 동행한 흔적이 없다. 박명원의 「9.17 장계」를 보면, 8월 12일에는 황제가 희대의 공연 관람에 동참하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에 새벽에 입궐하여 묘시부터 미정까지 공연을 보았고, 황제가 내린 선물을 받았다고 하였다. 8월 13일에는 만수절 하례에 참석하고, 전날과 마찬가지로 미정까지 공연을 관람한 뒤 황제의 특별 선물을 받아 왔다. 양일 모두 삼사는 새벽에 입궐하여 오후 2시경까지 공연을 관람했던 것인데, 박지원은 신분이 “종인”에 불과했기 때문에

90) 『六世班禪洛桑巴丹益喜傳』 제14장 鐵鼠年 8월 14일 조 판첸의 불꽃놀이 참석 사실은 청 측의 또 다른 사료[方略館 起居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乾隆帝于萬壽園賜班禪蒙古王公等人觀火戲』(건륭 45년 8월 14일), 『六世班禪朝覲檔案選編』, 北京: 中國藏學出版社, 1996, p. 264).

91) 『熱河日記』 「太學留館錄」, pp. 139-142.

여기에 입장이 허락되지 않았던 것이다.⁹²⁾

문제의 8월 14일 박명원과 박지원 두 사람의 행적을 짚어 보자. 먼저 『9.17 장계』에 따르면, 박명원은 미정까지 사흘째 공연을 관람한 다음, 후원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황제가 “장전”(帳殿)에 도착한 뒤 “화포 및 잡희”를 구경하였는데, 이는 날이 어두워진 뒤에야 끝났다. 이어서 예부로부터 이튿날 북경으로 떠나라는 “황지”를 전달받았다. 12일·13일에는 낮에 숙소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14일에는 불꽃놀이에 참석하느라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쫓겨내에 머물렀던 것이다.

그러면 박지원은 14일의 행적을 어떻게 전하고 있을까? 삼사는 새벽에 입궐했고, 자신은 실컷 잠을 자고 일어나 태학의 숙소에서 머물러 있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돌연 “오후에 세 사신이 대성전(大成殿)에 들어가 배알”한 뒤 추사시(鄒舍是)와 왕민호(王民皐)에게 불품 없는 선물을 준 일을 전한다. 황혼 무렵 북경으로 돌아가라는 황제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행은 밤중까지 짐을 꾸렸다.⁹³⁾

『태학유관록』의 8월 14일 일기에서 주목할 점은 세 가지이다. 첫째, 박지원은 이날 숙소를 떠난 적이 없다. 12일·13일과 마찬가지로 “종인” 신분의 박지원은 입궐이 허락되지 않았던 것이다. 둘째, 이날 오후 세 사신의 ‘대성전 배알’은 『9.17 장계』의 내용과 모순된다. 장계에 따르면 삼사는 종일 쫓겨내에 머물렀으므로, 삼사의 ‘대성전 배알’ 자체가 ‘허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설사 ‘허구’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박지원이 삼사의 ‘대성전 배알’을 언급한 것은 ‘봉불지사’ 문제와 관련하여 의미심장하다. 공자를 모신 태학에 체류했으면서도 대성전을 참배하지 않았다

92) 『9.17 장계』에서 박명원은 삼사 외에 “통사(通事) 3인, 종관(從官) 4인, 종인(從人) 64명”이 열하로 갔다고 보고하였고, 이 가운데 통사와 종관의 명단은 『열하일기』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熱河日記』 『行在雜錄』, p. 188). 박지원의 이름은 이 명단에 없으므로 그가 “종인” 신분으로 열하에 갔음을 알 수 있다.

93) 『熱河日記』 『太學留館錄』, pp. 142-147.

고 한다면 박명원의 ‘봉불지사’ 혐의는 더욱 짙어졌을 것이다.

셋째, 14일 사신의 동정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활동이라 할 “화포 및 잡희” 구경 사실이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⁹⁴⁾ 이는 「찰십륙포」에서 ‘건릉과 판첸의 만남’ 날짜를 기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해야 한다. 만약 박지원이 14일의 일기에서 박명원이 불꽃놀이를 구경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면, 『열하일기』의 독자는 「찰십륙포」의 ‘건릉과 판첸의 만남’이 8월 14일의 일이었음을 쉽게 파악했을 것이다. 또한 앞의 두 부분과 달리 ‘건릉과 판첸의 만남’은 박지원이 “목도한 바”가 아니라 “전해 들은 바”에 근거했음도 어렵지 않게 알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박지원은 그렇게 쓰지 않았다. 14일의 일기는 사신 일행의 불꽃놀이 구경 사실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다. 불꽃놀이 광경을 묘사한 「매화포기」에서도 박지원은 날짜를 언급하지 않았다.⁹⁵⁾ 이 때문에 『열하일기』만 읽은 독자라면 「찰십륙포」의 ‘건릉과 판첸의 만남’을 8월 11일의 일로 읽게 된다. 또한 박지원은 「찰십륙포」에서 “황제가 원중에서 매화포를 놓고는 사신을 불러 (궁에) 들어와서 보게 하였다.”라고만 썼다. 비록 자신이 사신과 동행했다고 명기한 것은 아니지만, 8월 11일 오전 판첸 접견 이후 그가 사신과 행동을 함께했음을 읽은 독자는 박지원이 불꽃놀이 현장에 동석했을 것이라고 ‘오해’하기 십상이다. 만약 불꽃놀이가 14일의 일임을 밝혔다면 이런 ‘오해’는 일어날 수 없다. 14일에 박지원은 줄곧 태학에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신 일행의 불꽃놀이 구경 사실에 대한 14일 일기의 ‘침묵’, 그리고 「매화포기」의 불꽃놀이 날짜에 대한 ‘침묵’ 등은 「찰십륙포」의

94) 11월 5일 서장관 조정진이 제출한 문건사건을 보면, 총 14개 항목 가운데 열 번째 항목에서 8월 14일 만수원에서 있었던 불꽃놀이와 씨름 등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承政院日記』 정조 4년 11월 5일 조). 또한 10월 17일 국왕을 알현한 윤감중도 불꽃놀이의 장관(“一大觀”)을 보고하였다(『承政院日記』 정조 4년 10월 17일 조).

95) 『熱河日記』 『山莊雜記』, pp. 247-248.

불꽃놀이 날짜 누락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찰십륜포』의 독자로 하여금 ‘건륭과 판첸의 만남’을 8월 11일 박지원 자신이 “목도한 바”로 읽게 하기 위한 주도면밀한 구성적 ‘장치’로 보지 않을 수 없다.⁹⁶⁾ 박지원은 불꽃놀이의 날짜를 밝히지 않은 채 『태학유관록』의 8월 11일 일기와 연결된 『찰십륜포』에서 ‘건륭과 판첸의 만남’을 묘사하였다. 독자는 자연스럽게 이 묘사를 박지원의 목격담(eye-witness account)으로 읽게 된다. 만약 삼사의 불꽃놀이 참석이 14일이었음을 밝혔다면, 『찰십륜포』의 ‘건륭과 판첸의 만남’은 전문담(hearsay account)이 되어 버린다.

결국 박지원은 치밀한 구성을 통해 『찰십륜포』를 읽는 독자의 ‘시간착오’를 ‘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마도 그는 두 가지 효과를 노렸을 것이다. 첫째, 독자로 하여금 『찰십륜포』 전체를 같은 날의 일로 읽게 하는 것이다. 둘째, 『찰십륜포』 전체를 ‘목격담’으로 읽게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공히 ‘봉불지사’를 위한 변호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은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6. 결론

주지하는 바와 같이 내용적 측면에서 『열하일기』가 여타의 ‘연행록’을 뛰어넘는 관심의 대상이 된 데에는 진하특사 일행의 ‘열하 경험’이 크게 작용하였다. 그런데 이 글에서의 고찰을 통해서 드러났듯이 『열하일기』의 ‘열하 경험’ 관련 텍스트는 박지원의 ‘봉불지사’ 변호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즉 ‘봉불지사’ 변호라는 컨텍스트가 ‘열하 경험’에 관한 묘

96) 만약 삼사의 ‘대성전 배알’이 완전한 허구가 아니었다면, 그것은 8월 12일 또는 13일 오후의 일이었을 수 있다. 이 경우 박지원은 ‘대성전 배알’을 14일 오후의 일로 바꾸어 적은 셈이 되는데, 이것 역시 ‘건륭과 판첸의 만남’이 있었던 불꽃놀이의 날짜를 11일로 읽게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장치’로 해석할 수 있다.

사를 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보면 『찰십률포』에서 박지원이 판첸의 외모를 지극히 부정적으로 묘사한 것도 단지 주자학자의 편견 때문만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⁹⁷⁾ 또한 『태학유관록』에 ‘봉불지사’ 변호론 전개를 위해 박지원이 깔아 놓은 또 다른 ‘장치’들이 눈에 들어 오기 시작한다. 8월 9일 일기에는 청의 통관이 조선에서 부처를 공경하는지, 사찰은 얼마나 있는지 묻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어서 8월 10일에는 황제가 “군기대신”을 보내어 판첸을 만나러 가게 하였고, 박명원 일행이 당혹감과 분노 속에서 시간을 끌다가 결국 날이 저물어 접견이 취소되는 에피소드가 꽤나 길게 서술되고 있다. 박지원은 이 일을 두고 황제가 “조선은 예의를 알지만 (그) 배신(陪臣)은 예의를 모른다.”는 말까지 하여 청의 통관들이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진 일도 언급하였다.⁹⁸⁾

이제 8월 9일의 장면은 8월 10일과 11일에 벌어질 사태의 ‘전조’ 내지 ‘복선’으로 읽힌다. 8월 10일의 에피소드는 이튿날 사신 일행이 판첸을 만난 것 자체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며 황제의 명령에 저항한 끝에 불가항력의 상황에 처하여 어쩔 수 없이 한 일이지 황명이라고 마냥 고분고분 따른 결과는 아니었음을 말하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

8월 11일 황제 알현 전에 “군기대신”이 와서 조선에 사찰과 관제묘가 있는지 묻는 장면도 달리 읽힌다.⁹⁹⁾ 『9.17 장계』는 『열하일기』에 등장하는 8월 9일 통관의 질문이나 8월 10일의 에피소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지만, 황제 알현 후에 “군기장경”이 와서 던진 질문은 기록하였다. 이 장계의 문맥에서 “군기장경”의 질문은 우연히 불쑥 던진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이미 8월 10일의 에피소드를 소개한 바 있는 『태학유관록』은

97) 『熱河日記』 『札什倫布』, p. 184.

98) 『熱河日記』 『太學留館錄』, pp. 126-134.

99) 『熱河日記』 『太學留館錄』, p. 138.

사찰과 관제묘에 대한 질문을 황제 알현 전에 배치함으로써, 조선 사신을 판첸과 만나게 하려는 황제의 의지가 얼마나 집요했는지 강조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견문의 취사선택과 배치·구성에서 관찰되는 박지원의 비범한 능력에 감탄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의 역사가는 마냥 감탄만 하고 있을 수 없다. 지금까지 『열하일기』는 역사학적 사료 비판의 대상이 된 적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종래의 연구는 대개 『열하일기』의 텍스트에 대한 ‘내부’적 접근에 치중한 나머지, 당시의 어떤 컨텍스트 속에서 텍스트가 형성되었는지를 밝힐 수 있는 ‘외부’적 접근에는 관심이 적었다. 그러나 이 글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열하일기』 속 ‘열하 경험’의 중심에 있는 판첸 관련 텍스트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충실히 전달한 것이라기보다는 ‘봉불지사’ 변호를 위한 주도면밀한 구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기실 문학 작품으로서 『열하일기』의 가치는 오히려 단순한 여행 견문록에 머물고 있지 않다는 점에 있을 것이며, 따라서 이 글의 고찰은 『열하일기』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 그러나 사료로서 『열하일기』를 대할 때에는 저자의 의도를 염두에 두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목적담과 전문담을 구별해야 하며, 가능한 경우라면 다른 사료와의 일치·불일치 검토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오직 『열하일기』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기록에 대해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열하일기』의 사료적 가치를 죄다 부인해서도 곤란함은 물론이다. 『열하일기』에서 박지원은 ‘봉불지사’ 변호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렇다고 사실의 왜곡까지 감행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찰십륜포』에 8월 14일 ‘건릉과 판첸의 만남’을 배치한 것은 날짜와 장소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건 내용의 유사성(‘의례’ 문제)을 좀 더 중시한 구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박지원은 불꽃놀이와 날짜를

8월 11일로 명시한 적도 없다. 적극적인 사실 왜곡은 시도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불꽃놀이를 직접 보았다고 말한 적도 없다. 『열하일기』를 읽으면서 불꽃놀이를 8월 11일의 일로 여긴 것도, ‘건륭과 판첸의 만남’을 박지원 자신의 목격담으로 받아들인 것도 모두 우리였다. 박지원은 그저 밝히지 않았을 따름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열하일기』의 ‘열하 경험’ 텍스트화에는 귀국 후에 불거진 ‘봉불지사’ 혐의에 대한 변호론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런데 ‘봉불지사’ 문제는 궁극적으로 판첸과의 만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당시 열하에서 판첸의 존재감을 고려할 때, 설사 귀국 후에 ‘봉불지사’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박지원은 아마 판첸과의 만남을 대서특필하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 추측된다.¹⁰⁰⁾ 게다가 판첸은 이미 열하에서부터 박명원 일행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돌발사태’의 진원이었다. 따라서 『열하일기』의 ‘열하 경험’이 판첸에 초점을 맞춘 것은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진하특사 일행이 열하를 방문했던 목적은 건륭제의 칠순을 축하하는 데 있었다. 이 점은 박지원 자신도 밝힌 바였다. 「황교문답」을 보면, “선생께서 여기 열하에 오신 까닭은 오직 서불(西佛)〔판첸: 인용자〕을 배알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까? (아니면 황제의) 성탄(聖誕)을 축하하러 오신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박지원은 “오로지 황상의 칠순 경절(慶節)을 축하(하려고 온 것입니다.)”라고 답하고 있다.¹⁰¹⁾ 대화 쌍방 모두 판첸을 만나는 일과 건륭제의 칠순을 축하하는 일을 뚜렷이 구별하고 있으

100) 당시 열하에 가지 않고 북경에 잔류했던 노이점의 『수사록』을 보면, 박명원 일행이 북경에 돌아온 8월 20일의 일기에서 대부분의 지면을 판첸에 관한 이야기에 할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록』의 말미에는 아예 「반선시말(班禪始末)」이라는 별도의 글을 덧붙이고 있다(權廷雄(1999), 앞의 논문, 196-197쪽, 239쪽). 이는 진하특사의 열하 여행에 대한 당시 조선인의 관심이 판첸에 집중되어 있었음을 반영한다.

101) 『熱河日記』 「黃教問答」, p. 169.

며, 박지원은 전자가 아닌 후자가 열하 방문의 유일한 목적임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열하일기』에서 ‘열하 경험’의 초점은 판첸에게 쏠리고 말았고, 그로 인해 박지원은 열하의 칠순 만수절 자체가 어떤 의미의 사건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두지 않게 되었다.¹⁰²⁾

이것 역시 ‘봉불지사’ 문제 때문에 박지원의 시야가 좁아진 결과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청과 ‘몽골·티베트’의 관계에 대한 박지원의 이해 수준이 그다지 높지 못한 데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다. 단적인 예로 “몽고의 48부(部)가 바야흐로 강한데, 그중에서도 토번(吐番)은 더욱 강하고 사납다. 토번은 서북의 오랑캐로 몽고의 별부(別部)인데 황제가 더욱 두려워하는 것이다.”라는 박지원의 말을 보자.¹⁰³⁾ 여기서 “몽고의 48부”는 박지원이 몽골을 가리킬 때 자주 쓰는 표현인데, 이 말은 기껏해야 내몽골을 포괄할 뿐 외몽골이나 청해(靑海) 등지 몽골 각 부는 반영하지 못한다. 또 내몽골의 경우라 할지라도 “48부”는 강희 말년의 상황으로, 건륭 45년의 시점에서는 “49부” 또는 “49기(旗)”가 정확하다.¹⁰⁴⁾ 또한 박지원은 여기에서 강하고 사나운 토번을 황제가 몹시 두려워한다고 말하고, 또 다른 곳에서 “서번(西藩)[문맥상 티베트: 인용자]은 강하고 사나우나 황교(黃敎)를 심히 두려하므로” 황제가 그 법사(法師)를 우대한다고 하였다.¹⁰⁵⁾ 즉 박지원은 판첸에 대한 청의 우대 이유를 티베트의 군사적 위협 가능성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이

102) 열하의 칠순 만수절 자체가 어떤 의미의 사건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구범진(2013), 앞의 논문 참조.

103) 『熱河日記』 『太學留館錄』, p. 134.

104) 박지원보다 10년 뒤에 열하를 방문했던 서호수(徐浩修)는 내몽골 각 부의 현황에 대하여 대단히 정확한 인식을 보이고 있다(박원길(2010), 『조선과 몽골』, 서울: 소나무, 283-299쪽). 사실 박원길이 정확히 지적하였듯이, 박지원의 몽골 인식 수준은 서호수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박원길(2010), 위의 책, 698-701쪽).

105) 『熱河日記』 『審勢編』, p. 219.

는 박지원이 과거 토번 왕국이 당(唐)을 군사적으로 위협하였다는 역사의 기억을 ‘호출’한 탓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당시의 ‘몽골·티베트’에 대한 박지원의 이해 부족을 노정한 것으로, 노이점이 “몽고 사람들을 누르기 위해” 그들이 양모(仰慕)하는 판첸을 특별히 초치(招致)한 것이라고 기록한 것이나¹⁰⁶⁾ 건륭 46년 4월 ‘동지사행’을 마치고 귀국한 부사 신대승이 “몽고를 두려워해서” 건륭제가 판첸을 우대하였다고 보고한 것보다도 정확성이 떨어진다.¹⁰⁷⁾

결국 ‘봉불지사’를 위한 변호의 필요성과 당시의 ‘몽골·티베트’에 대한 박지원의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열하일기』의 ‘열하 경험’에는 칠순 만수절에 대한 좀 더 다양한 각도의 관찰 및 이해가 비집고 들어갈 여지가 사라져 버렸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진하특사의 열하 방문이나 판첸과의 만남이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였던 만큼 『열하일기』의 이러한 한계는 사실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06) 權廷雄(1999), 앞의 논문, 196쪽.

107) 『承政院日記』 정조 5년 4월 8일 조. 지금까지 박지원은 당시의 정세를 간파하는 날카로운 관찰력의 소유자로 높이 평가되어 왔다. 그 대표적 사례로 많은 연구자들이 황제의 열하 순행 목적이 피서가 아니라 실은 몽골을 제압하는 데 있다는 박지원의 견해를 종종 인용한다(任桂淳(2004), 「18세기 清朝 제2의 政治中心地, 承德 避暑山莊」, 『明清史研究』 21, 169쪽; 차혜원(2010), 앞의 논문, 334쪽 등). 하지만 열하 순행을 몽골 제압책으로 보는 견해는 조선에서 일찌감치 ‘상식’이 되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예컨대 강희 말년에 해당하는 숙종 38년(1712) 4월 ‘동지사행’을 마치고 돌아와 복명하는 자리에서 서장관 유명웅(兪命凝)은, “저들은 몽고를 걱정거리로 여깁니다. 황제는 매년 4월마다(열하로) 가서 8월에(북경으로) 돌아오는데, 피서를 핑계로 대지만 그 내실은 곧 열하가 몽고 지방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몽고를) 진압하는 계책으로 삼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라고 보고하고 있는 것이다(『承政院日記』 숙종 38년 4월 4일 조).

참고문헌

1. 1차 자료

『同文彙考』, 國史編纂委員會, 1978.

『備邊司謄錄』.

『承政院日記』.

『六世班禪朝覲檔案選編』, 北京: 中國藏學出版社, 1996.

『日省錄』.

『朝鮮王朝實錄』.

『清宮熱河檔案』, 中國檔案出版社, 2003.

『清實錄』, 北京: 中華書局, 1985.

嘉木央·久麥旺波, 許得存·卓永強 譯, 『六世班禪洛桑巴丹益喜傳』, 拉薩: 西藏人民出版社, 1990.

丹珠昂奔 主編, 『歷輩達賴喇嘛與班禪額爾德尼年譜』, 北京: 中央民族大學出版社, 1998.

朴趾源, 『熱河日記』,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1997.

錢寶甫 編, 『清代職官年表』, 北京: 中華書局, 1980.

2. 2차 자료

강동엽(1988), 『熱河日記研究』, 서울: 一志社.

구범진(2013), 『1780년 열하의 칠순 만수절과 건륭의 ‘제국’』, 『명청사연구』 40, 177-217.

權廷雄(1999), 『盧以漸의 『隨槎錄』: 解題 및 原文 標點』, 『경북사학』 22, 141-239.

김경록(2006), 『조선시대 사행과 사행기록』, 『한국문화』 38, 193-230.

金東錫(2005), 『『수사록』과 기타 자료를 통해 읽어보는 『열하일기』』, 『대동한문학』 23, 173-216.

- 김명호(1990), 『熱河日記 研究』, 서울: 창작과 비평사.
- 김혈조(2008), 「『熱河日記』 번역의 여러 문제들」, 『漢文學報』 19, 679-718.
- 김혈조(2009), 『열하일기』, 서울: 돌베개.
- 閔斗基(1986), 「熱河日記에 비친 清朝政治의 諸樣相」, 閔斗基, 『中國近代史研究』, 서울: 一潮閣, 54-84.
- 박원길(2010), 『조선과 몽골』, 서울: 소나무.
- 任桂淳(2004), 「18세기 清朝 제2의 政治中心地, 承德 避暑山莊」, 『明清史研究』 21, 155-188.
- 차혜원(2010), 「열하사절단이 체험한 18세기 말의 국제질서: 변동하는 조공책봉 관계의 증언」, 『역사비평』 93, 329-353.
- 崔韶子(1992), 「18세기 후반 조선지식인 朴趾源의 對外認識」, 『韓國文化研究院論叢』(이화여대) 61-1, 273-313.
- 崔韶子(1997), 「18世紀末 東西洋 知識人の 中國認識比較: 朴趾源의 『熱河日記』와 G. Macartney의 『中國訪問使節日記』를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59, 1-40.
- 崔千集(1997), 「『熱河日記』의 表現方式과 그 意圖」, 『문학과 언어』 18, 185-209.
- 姜東局(2012), 「清と朝鮮の關係における圈域の分離と融合: 朝鮮使節とパン첸・라마의邂逅(1780)を事例に」, 『名古屋大學法政論集』 245, 241-276.
- 石濱由美子(1994), 「パン첸라마と乾隆帝の會見の背景にある佛教思想について」, 『內陸アジア言語の研究』 9, 27-62.
- 村上信明(2006), 「パン첸라마三世의 熱河來訪と清朝旗人官僚의 對應: 十八世紀後半의 清朝チベット關係の一側面」, 『中國: 社會と文化』 21, 125-141.
- 平野聰(2007), 『大清帝國と中華の混迷』, 東京: 講談社.
- 柳森(2010), 「國內近三十年來關於六世班禪朝覲研究綜述」, 『四川民族學院學報』 19-2, 1-5.
- 柳森(2012), 「論《熱河日記》中的六世班禪形象」, 『民族文學研究』 2012-6, 148-155.
- 馬靖妮(2007), 「《熱河日記》中的中國形象研究」, 中央民族大學博士學位論文.
- 張雙志(2007), 「18世紀朝鮮學者對清代西藏的觀察: 讀朴趾源《熱河日記》」, 『中國藏學』 2007-3, 33-39.
- 張亞輝(2013), 「六世班禪朝覲事件中的空間與儀禮」, 『中國藏學』 2013-1, 92-100.
- Hevia, James L., *Cherishing Men from Afar: Qing Guest Ritual and the Macartney Embassy of 1793*,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원고 접수일: 2013년 10월 30일

심사 완료일: 2013년 11월 25일

게재 확정일: 2013년 12월 3일

ABSTRACT

Meeting the Panchen Lama in *Yŏrha ilgi*

- A Critical Reading of Pak Chiwŏn's Account of the 1780
Chosŏn Embassy to Chengde -

Koo, Bumjin

In 1780 a Chosŏn embassy led by Pak Myŏngwon was invited to visit Chengde, or *Yŏrha*, and honor Qianlong's seventy-*sui* birthday. A detailed record of this embassy is provided in Pak Chiwŏn's *Yŏrha ilgi*, where Pak describes the encounter between the Chosŏn emissaries and the Panchen Lama in great detail. To date, Pak's *Yŏrha ilgi* has been read as a faithful historical record and a disinterested account of the Chosŏn emissaries' experiences in Chengde. However, when we compare Pak's account with various other historical records of his time, it becomes clear that *Yŏrha ilgi* is far from an objective account. The famous account of the statues of Buddha is a case in point. Pak Myŏngwon and his fellow emissaries received the statues from the Panchen Lama as gifts. They interpreted the statues as gifts given upon Qianlong's orders. Consequently, they decided to carry them all the way back to Chosŏn where they were severely criticized for violating the strict Neo-Confucian injunctions against Buddhism. Pak's *Yŏrha ilgi* was written in defense of Pak Myŏngwŏn's actions in the

face of this political criticism. In *Yŏrha ilgi*, Pak argues that the encounter with the Panchen Lama took place under circumstances far beyond Pak Myŏngwŏn's control. A close reading of *Yŏrha ilgi* alongside other historical documents reveals that Pak Chiwŏn deliberately blurs the line between eyewitness account and second-hand report by leading his readers to confuse the date of a significant event in which Qianlong met the Panchen Lama in public. As a minor figure who was not endowed with diplomatic powers, Pak Chiwŏn was absent from many of the events he reported on. *Yŏrha ilgi* should not be read at face value, as if it were an objective historical record, but in historical context alongside other historical documents.